

일본민주당 정책집



The Democratic Party of Japan



민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for Democracy and Policies

내각	5
어린이·남녀공동참가(参画)	11
소비자	19
행정개혁	20
분권개혁	24
정치개혁	31
우정사업·정보통신·방송	36
법무	40
외무·방위	47
재무·금융	55
세제	60
문부과학	70
후생	83
연금	95
노동	98
농림수산	105
경제산업	117
에너지	125
국토교통	127
환경	140
헌법	157

NPO 활동촉진 및 지원세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을 비롯한 비영리 섹터(NPO 섹터)의 육성은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공익법인 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이러한 활동이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 내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현행 특정비영리활동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은 인정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정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전체(약 3만 8천개 법인)에서 겨우 95개 법인에 불과합니다(2009년 7월 1일 현재). 인정NPO법인제도를 재검토하여 기부세제를 확충하고, 인정절차의 간소화, 심사기간의 단축 등을 하겠습니다.

국제 NGO에 대해서도 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현행 장애자기본법(障害者¹⁾基本法)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과 구속력의 측면에서 대단히 취약합니다. 세계에서 장애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가진 나라는 30개국 이상에 이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처는 늦고 있습니다. 2006년 12월 유엔에서 채택된 장애인권리조약의 비준을 위해서, 장애자 제도개혁추진본부를 설립함과 동시에 국내 관련법의 정비 및 “장애자차별금지법”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일본에서는 장애자(障害者)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장애는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장애(障碍)로 바꾸어 사용했다.

자살 예방



자살자가 11년 연속 3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 자살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긴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자살의 대부분은 그 배후에 사회적인 문제가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자살에 이르는 요인분석이나 조사, 대응방안, 정보제공, 자살자의 가족 및 자살 미수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고 있는 “자살대책기본법”이 민주당 주도로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가 되어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후 제 관제에 대한 대응



오늘날 일본의 평화와 번영이 있기까지는 지난 세계대전에서 국내외의 많은 희생이 존재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후의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북방영토 문제를 해결하여 일러평화조약을 체결하고, 납치문제를 포함한 제 현안을 해결한 후에 북일국교정상화에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회 도서관에 영구평화조사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립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며, 시베리아 억류자에 대한 미지불 임금문제, 위안부 문제 등에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야스쿠니 문제 · 국립 추도시설의 건립



야스쿠니(靖国)신사는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기 때문에 총리나 각료가 공식참배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반감 없이 전몰자를 추도하고, 반전·평화를 맹세할 수 있도록 특정 종교적 색채를 띠지 않는 새로운 국립추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기관리 체제의 정비



우리나라에 대한 침략, 대규모 테러, 대규모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수집, 분석체제를 내각 관방에 일원화하는 한편, 위기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진 “위기관리청(가칭)”을 창설하겠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시의 수도 기능의 백업 체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테러 발생에 대비하여,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 하이잭(hijack), 핵·생물·화학무기 테러, 재외국민과 재외외국인의 안전, 테러 자금, 사이버 테러 등 포괄적인 대책을 정비하겠습니다.

경찰 개혁



수사용 보상비 등을 비자금화 한 경리부정, 정보의 누설, 경찰관에 의한 범죄 등 각종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어 경찰행정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찰 불상사에 대한 공안위원회의 존재감은 거의 없으며, 그 역할 또한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의 체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그 사무를 경찰 스스로가 하고 있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공안위원회·도도부현(都道府縣) 공안위원회에 독립적인 사무국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도도부현 지사 및 도도부현 의회에 의한 감독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제도를 대폭 확충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찰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치안 대책



검거율 향상을 위해 일상생활과 밀착한 ‘지역·형사·생활안전’에 관계되는 경찰 기능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방범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치안방법의 확보를 위해서는 경찰의 수사능력 향상이 필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경찰권의 제약 없는 확대는 수사권의 남용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 등 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시민의 경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협조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치안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방범 카메라·N시스템(자동차 번호 자동 판독장치)·DNA 감정 등 새로운 수사 기법의 이용에 있어서는 인권을 고려하고 운용원칙을 명확하게 정하며, 개인 정보보호의 관점에서 법 규제를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도청·도찰(몰래 카메라)에 의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이러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종합적 총기범죄대책 추진



나가사키(長崎)현 사세보(佐世保)시 엽총난사사건 등을 계기로 민주당이 주장한 합법적 총기소지 허가의 결격사유, 엄격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총도법(銃刀法)이 2008년 170회 임시국회에서 성립했습니다. 비합법적 총기에 대해서도 폭력단 관계자 등에 대한 적발·검거, 밀수입 저지를 위한 해상대책 등을 철저히 하여, 종합적인 총기범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재해발생 후의 구급활동이나 정보전달, 교통규제, 응급복구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방공공단체·경찰·소방·자위대·민간기업·자원봉사·NPO 등의 역할분담, 협력체제의 정비를 추진하고, 행정의 위기관리체제를 확충함과 아울러 민간의 제반 활동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리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위기관리청(가칭)”을 창설하여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하겠습니다.

2007년 피해자생활재건지원법(被災者生活再建支援法)이 개정되어 주택

본체도 포함한 지원금의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하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지진의 위험이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의 피해는 막대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존 부적격 주택의 내진(耐震)개조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국지성 호우나 도시에서의 하천 범람 등 새로운 유형의 재해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오키나와 정책



오키나와(沖繩)는 지난 세계대전에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상전이 발발한 곳으로, 수많은 희생자를 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패전 후에도 미군에 의한 점령을 경험하였고, 본국 복귀 후에도 경제 진흥이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 1999년 7월 “민주당 오키나와정책”, 2002년 8월 “민주당 오키나와비전”을 책정하고, 2005년과 2008년에는 “민주당 오키나와비전”을 개정했습니다.

“민주당 오키나와비전”에서는 종래의 보조금이나 인센티브에 의존하는 활성화가 아니라 오키나와 본래의 매력과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경제 진흥, 고용창출, 자연환경정책, 교육정책 등 오키나와의 진정한 자립과 발전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주권의 선구적인 사례로서 각종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함과 동시에, 조건부 보조금 폐지·일괄교부금화에 대해서도 우선 오키나와현을 모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키나와는 여전히 재일주류미군전용 시설의 대부분이 집중되어 있는 등 주민은 과중한 부담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기지 축소 시에 발생하는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안전망 확보를 포함한 충분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당사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오키나와 재류 미군의 과제를 논의하는 테이블에 오키나와 현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누민족의 인권을 존중한 종합적 시책 수립



2008년 6월 국회에서 채택된 “아이누민족²⁾을 선주민족으로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결의”, 2007년 “선주민족의 권리에 관한 유엔선언”에 입각, 아이누민족의 인권을 존중하고 권리를 확립하는 종합적 시책을 진전시키겠습니다.

북방 영토 문제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에토로푸(択捉)섬, 쿠나시리(国後)섬, 시코탄(色丹)섬 및 하보마이(齒舞)군도의 소위 북방 4개 섬의 조기반환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제·문화 교류를 통한 러시아 국민과의 신뢰양성, 원거주자에 대한 지원, 국민여론의 환기 등 반환을 위한 환경정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주개발이용 체제의 재편 일원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이용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2009년도 중에 각 성청의 우주관계 섹션과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 기획부문을 내각부하에 재편 일원화하는 한편, 장래에는 JAXA를 포함한 독립적인 조직의 창설을 검토하겠습니다.

2) 일본 홋카이도(北海道)에 살고 있던 선주민족

어린이·남녀공동참가(参画)

일본민주당 정책집

출산·육아에 필요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의 경감



자녀를 둔 모든 보호자가 여유와 책임을 가지고 육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수당과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급여의 충실 등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남녀가 함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자기계발과 지역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따른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학동보육 대기아동 해소를 추진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와 아동관 등의 육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육아불안과 지역에서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지원 상담과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 만들기 추진하겠습니다.

월액 2만 6,000엔(연액 31만 2,000엔)의 "아동 수당" 창설



차세대의 사회를 짊어질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을 응원하는 입장에서, 소득세 부양공제와 배우자공제를 재검토하고 아동수당을 창설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성장하기 위한 기초적인 비용(피복비, 교육비 등)을 보장하기 위해서, 중학교 졸업까지 어린이 한 사람당 월액 2만 6,000엔(연액 31만 2,000엔)을 지급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현재의 출산 일시금(2009년 10월부터 42만엔)을 재검토하여, 정부로부터의 조성금을 합하여 출산 시에 55만엔을 지급하겠습니다.

어린이·가정정책의 일원화



어린이와 가정에 관련된 정책의 기획입안, 집행기관을 일원화하겠습니다. 어린이와 가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보육소는 후생노동성, 통학로는 국토교통성, 학원은 경제산업성 등으로 많은 성청에 걸쳐있습니다.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포괄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육 서비스의 충실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약 4만명 있는 반면에 유치원은 정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의 여유교실이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인가보육소 분원의 증설, 가정보육제도(보육마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장래에는 인가보육소의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양'의 확보와 함께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보육소는 후생 노동성이라는 이원행정을 수정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취학 전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학동 보육의 확충



어린이에게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기 위해 학동 보육을 확충하겠습니다. 가정에서처럼 있을 수 있는 장소로서 학동 보육을 적절한 규모로 전문 지도원 아래 원하는 모든 초등학생이 보육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겠습니다.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잔혹한 폭력이나 성폭력 등 유해정보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서적의 구분 진열과 방송시간대에 대한 배려 등 어린이들이 유해정보에 접촉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성인사회의 도덕성과 보호자의 책임감을 강화하여 어린이의 권리를 옹호하겠습니다.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정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도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정비



가정과 학교, 공원과 수영장 등 각종 시설에서 어린이들의 끔찍한 사고 또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하겠습니다.

제조사에 의한 사고방지정보의 공표를 촉진하기 위해 “소비생활용 제품의 위험정보공표법” 제정을 비롯해, 자전거의 보조의자에 어린이를 태울 경우 유아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학교와 통학로에서의 범죄방지를 위하여 학교 안전전문원 배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학교안전대책기본법”의 제정 등 안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정비를 하겠습니다.

성적 확대 · 성적 착취로부터 어린이를 보호



어린이들을 성적 확대와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매춘 · 아동포르노처벌법을 개정하겠습니다.

아동포르노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아동포르노 취득죄의 신설, 벌칙의 전반적인 강화와 대상범위의 확대,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규정을 재검토하여 후속체제구축 등을 도모하고, 충실하고 실효성 있는 내용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동학대방지대책의 충실



학대받은 어린이들의 보호 및 학대방지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전국의 아동상담소가 대응한 아동학대에 관한 상담이 2008년도에 4만 2,000건을 넘는 등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당한 어린이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도 정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체제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체제를 충실히 하고, 아동상담소 등 관계기관의 기능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편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대책의 확충



편부모 가정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일할 수 있는 재택취로의 촉진 등 실효성 있는 취로의 보장, 보육소 우선 입소 등 육아 지원, 이혼 시의 양육비 지불이행확보책 등 취로지원과 경제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으로 편부모 가정에 대한 자립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동부양수당 지급수준의 변경을 원래대로 되돌리고, 현재 적용대상이 아닌 부자(父子)가정에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아동부양수당법을 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 4월에 폐지된 생활보호급여의 모자(母子)가산을 부활시키겠습니다.

DV 방지법 강화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DV³) 방지법을 더욱 충실히 강화함과 동시에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체계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피해 당사자와 지원자의 목소리를 참고하면서, 피해자의 보호와 자립지원을 보다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모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을 충실히 하고, DV 피해자의 보호명령제도의 확충, 민간 지원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가해자 갱생 및 미연 방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생식보조의료에 관련된 법 정비



대리출산 등 생식보조의료(生殖補助医療)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일본에는 생식보조의료에 관한 법률이 없어 일본산과부인과학회의 자율적 규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생식보조의료에 관한 기본법 제정도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임치료를 대해서는 적응증상이나 효과가 명백한 치료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검토하고 지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지 않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선택을 인정하는 사회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연금제도의 확립



모든 사람이 같은 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취로형태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으며 안심하고 고령기를 맞이할 수 있는 연금제도를 만

3) domestic violence의 줄임말로 주로 남편의 아내에 대한 가정 내 폭력을 일컫는다.

들겠습니다.

현재의 연금제도는 자영업자, 피고용자, 공무원 등 취로형태에 따라 별도로 되어있어, 많은 사람들이 불공평함을 느끼기 쉬운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연금제도가 개인단위가 아니라 세대단위로 되어 있어 느끼게 되는 커다란 불공평을 해소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새로운 연금제도를 만들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남성, 여성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건강 확보, 지역 활동, 자기계발 등 개개인의 의식과 요구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 즉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을 조화시켜 건강하고 충실하게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



진정한 남녀평등을 위한 기반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립, 자율능력의 형성을 교육 목표로 하여, 직업체험학습, 남성의 가정참가촉진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원, 의료·복지관계, 경찰관, 출입국 직원 등 인권과 밀접하게 관련된 일의 종사자에 대한 남녀평등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정책이나 방침의 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쿼터제를 포함한 적극적 차별시정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고용분야에서의 진정한 남녀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생애를 통한 여성의 건강보장



성과 생식에 관한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의 확충을 도모하고, 여성이 심신 모두 건강하고 생동감 있게 자립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10대의 원치 않는 임신과 낙태를 줄이고 또한 성범죄 피해와 가해를 방지하기 위해 남녀 모두 연령에 맞는 성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여성과 남성의 생물학적 성차나 사회적 성차에 주목하면서, 여성의 심신의 증상을 보는 ‘성차의료(性差医療)’를 확충하겠습니다. 남녀 각각에 발생하기 쉬운 질병과 증상, 약의 부작용에 차이가 있거나, 노년기의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질병에 대해 이러한 ‘성차의료’를 고려한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남녀공동참가 관점에서의 국제협조



세계의 분쟁지역에서는 많은 여성과 어린이가 희생되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여성은 교육, 고용, 건강 등의 면에서 남성에 비해 취약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분쟁국가나 개발도상국에 있어서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일의 충실을 도모하는 것은 빈곤을 시정하고 남녀 격차, 국제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러한 관점을 해외 원조에 살리기 위해 정부개발원조(ODA)의 예산배분과 실시에 즈음하여, 조사, 계획, 입안, 추진, 평가 각 단계에 남녀공동참가의 관점을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모성보호에 관한 조약 등 관계조약의 체결과 여자차별철폐조약선택 의정서의 체결을 촉진하겠습니다.



민법을 개정하여 선택적 부부별성(夫婦別姓) 등을 도입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본인이 희망하여도 부부별성은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혼인한 부부의 96%는 여자가 개성하고 있습니다. 업무상의 사정으로 결혼 전의 성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거나 첫 번째 성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느끼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부부별성을 원하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달라는 목소리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제출해왔던 민법개정안에서는 결혼 외 자녀의 상속차별을 없앨 것, 재혼금지기간을 100일로 단축하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호적 없는 아이’ 문제 해결을 위해 민법 772조의 적출추정규정(嫡出推定規定) 등을 개정하겠습니다.

이 규정은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탄생한 아이를 전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추정을 뒤엎고 진정한 부자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적출부인소송(嫡出否認訴訟)’은 전남편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호적도 가질 수 없는 아이가 있는 등 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법무성 통달에 의하여 이혼 후에 임신했다는 것을 의사가 증명한 경우에는 전남편의 자식으로 하지 않고 출생신고가 수리되게 되었습니다만, 별거 중에 임신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혼에 의한 혼인 해소의 경우, 이혼에 앞서 사실상의 이혼상태에 있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의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정한 조건 하에 추정배제를 인정하는 규정을 민법, 호적법에 추가하겠습니다.

지방소비생활 상담행정의 강화, 확충



2009년 171회 정기국회에서 소비자청 및 소비자위원회설치법, 소비자안전법 등 소비자관련법이 여야당 수정협의를 결과 성립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수직적 성청관계, 업자행정에 대한 ‘감시’의 관점에서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업자에 대한 규제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는 중앙행정조직이 출범한 것입니다.

소비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상당’, ‘알선 및 해결’을 실효적으로 담당하는 지방소비생활센터를 강화하고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생활상담원의 권한, 지위, 처우개선에 대한 법적 정비를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비자행정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나 의회결의를 촉진하는 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위험정보공표법의 제정



자동차나 회전문, 공원 놀이기구 등 소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제품, 물품 등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 서서 기업에게 공개를 의무화 하는 “위험정보공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소비자에게는 제품 등의 위험정보가 신속하게 제공되며, 피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의 충실과 불법수익 박탈제도의 창설



소비생활상담의 과반을 차지하는 재산피해의 구제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실효성 있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소비자의 입장에 서서 소비자단체소송을 지원하고, 악덕업자가 위법으로 수집한 재산을 박탈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소비자 계약이나 카드 이용 등에 관한 지식도 포함하여 충실한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가스미가세키 개혁, 정관관계의 근본적 검토



여당의원이 100명이상 대신(장관), 부대신(차관), 정무관 등으로 정부에 들어가 중앙 성청의 정책입안, 정책결정을 실질적으로 담당함으로써 관료의 독주를 막고 정치가가 가스미가세키(霞が関)⁴⁾를 주도하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관(政官)⁵⁾의 유착에 의해 공정해야 할 행정이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정치가와 관료의 접촉에 관한 정보공개 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각 성 설치법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내각의 의사에 따라 유연하고 기동력 있는 성청재편이 가능하도록 고쳐 나가겠습니다.

행정쇄신회의 설치에 의한 국가사업의 재검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고 낭비 없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각 성청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쇄신회의(가칭)”를 설치하고 지자체 관계자나 민간 지식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 지자체, 민간이 해야 할 역할 분담의 재구성을 포함하여 집중적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4) 일본 도쿄에 있는 지명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본의 관청가를 일컫는 말로 관료를 지칭한다.

5) 정치가와 관료의 유착관계



독립행정법인, 공익법인 등 4,504개 법인에 2만 5,245명의 국가공무원이 낙하산 인사로 내려가 있고,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단체에 대해서 12조 1,334억엔(2007년도)의 자금이 흘러들어간 것이 민주당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중의원 예비 조사에서 판명되었습니다.

관공서의 알선에 의한 낙하산 인사는 관제담합(官製談合)이나 수의계약 등 세금낭비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 성청에 의한 국가공무원의 채용 알선을 금지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의 배경이 되고 있는 조기퇴직 권장을 폐지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함으로써 연금수급 연령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독립행정법인 등은 정부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사용하여 비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하거나 관료의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이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립행정법인 등은 원칙적 폐지를 전제로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민간에서 존속 가능한 것은 민영화하고, 국가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은 국가가 직접 운영하겠습니다.

낙하산 인사 수용의 대가로 업무를 독점하는 등 실질적으로 각 성청의 외곽단체화 되어 있는 공익법인은 제도개혁에 의하여 폐지하겠습니다.

독립행정법인의 세금낭비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1)각 성청의 독립행정법인 평가위원회 및 각 독립행정법인의 감사의 독립성 향상(공무원 출신자의 취임을 제한), (2)공모에 의해 독립행정법인의 장을 선임, (3)회계감사인의 감사대상이 되는 독립행정법인의 확대, (4)독립행정법인의 통합 시에 자산 감정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맺는 계약의 적정화



국가가 2007년도에 맺은 계약 중 중앙 성청 등의 간부 OB를 낙하산으로 받아들인 단체와 맺은 계약에 대해, 그 계약금액의 약 95%가 수의계약에 의한 것이라고 판명되었습니다.

국가가 맺는 계약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회계법을 개정하여 국가에 의한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에 대하여 계약 상대방의 낙하산 공무원의 재직 상황이나 수의계약, 지명경쟁입찰의 이유 등 엄격한 정보공개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계약의 사후검증 및 시정조치를 담당하는 “정부조달감시등위원회”를 설치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에 대해서 권고권을 가지는 “행정감시·평가원”을 국회에 설치하여 세금 낭비를 엄격하게 감시하였습니다.

관계담합 박멸



속출하고 있는 관계담합을 박멸하기 위해 관계담합방지법의 적용대상에 공무원 OB도 포함시켜 낙하산 인사를 받아들인 곳과의 담합을 방지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의 권한을 강화하는 한편, 성청 등에 대한 개선조치요구를 입찰 담합방지를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선조치요구를 받은 성청 등은 조사결과 및 담합방지를 위해 강구한 조치의 내용을 국회 등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또한 사건마다 제3자에 의한 조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였습니다. 독점금지법을 개정하고 담합을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를 확충하여 담합을 적발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진정한 행정개혁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결합니다. 신설하는 “행정쇄신회의(가칭)”에서 국가의 역할을 크게 한정하여 사무사업의 많은 부분을 지방에 이양하는 관점에서 사무사업의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직 및 정원은 행정쇄신회의의 제언에 따라 전면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대담한 지방분권 등의 결과, 국가공무원의 정수도 크게 감소하게 되어 국가공무원 총 인건비를 2할 이상 삭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공무원제도의 전면개혁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이 2008년 169회 정기국회에서 성립하여, 내각 일원관리에 의한 새로운 간부직 제도나 정관(政官)접촉의 투명화, 다양한 인재의 등용, 능력과 실적에 따른 처우의 실시 등 향후 공무원개혁의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개별법의 제정 등 구체화의 단계에서 기득권을 고집하는 관료에 의해 이러한 사항이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한편, 낙하산 인사의 알선 금지와 노동기본권의 회복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동기본권은 노동자 본래의 권리이며 중요한 노동조건 등은 당사자 없이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령 및 관행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있으며, 국제노동기구(ILO)도 1965년 이후, 이와 같은 일본의 상황이 ILO 조약의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엄격한 권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자율적인 노사관계를 실현하기 위해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하게 다른 취급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회복시켜겠습니다. 그 결과 근무조건은 민간과 같게 교섭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일반직공무원은 노동계약법이나 관례법리 등에 준한 고용보장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지역주권의 확립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를 중시하는 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집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여 지역주권국가를 수립하겠습니다.

당면 5-10년 동안은 지역주권국가의 기반을 구축하는 기간으로 하겠습니다. 지역주권국가의 모체는 기초자치단체로 하고, 기초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없는 사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할 수 없는 사무, 사업은 국가가 담당한다는 “보완성의 원리”에 기초하여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그 능력과 규모에 따라 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를 비롯하여 대응 가능한 모든 사무, 사업의 권한과 재원을 국가 및 도도부현으로부터 대폭 이양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구 30만명 정도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현재의 정령(政令)지정도시⁶⁾와 동등한 수준의 사무권한을 이양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할 수 없는 사무, 사업에 대해서는 인근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담당하는 구조를 만들던지 도도부현이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한의 이양에 병행하는 형태로, 지자체의 자주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대도시 제도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는 한편, 주민과 행정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정령지정도시의 구나 합병전의 시정촌(市町村) 등을 단위로 하여 일정한 권한을 가진 자치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외교, 방위, 위기관리, 치안, 식품, 에너지를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보장, 교육, 사회보장의 최종책임, 통화, 시장경제의 확립, 국가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등에 한정하여 갈 것입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이나 국가공

6) 일본의 대도시 등에 관한 특례제도의 하나로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그 대상이 되며 현재 18개 시가 정령지정도시로 지정되어 있다. 정령지정도시는 도도부현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에 준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무원도 국가차원의 업무에 전념하게 됩니다. 국가기관의 지방지분부국(地方支分部局)은 그 사무를 주로 도도부현이나 정령지정도시 등에 이관함으로써 원칙 폐지하여 국가와 지방의 이중행정 해소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지방지분부국의 사무, 사업인 하천관리 등의 광역적 대응이 필요한 사무는 도도부현이 협력하여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당분간 현행 도도부현의 틀을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도도부현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로의 사무, 사업의 이양에 따라 도도부현의 역할은 산업진흥, 재해대응, 하천, 기초자치단체 간의 조정 등에 한정되어 갑니다. 도도부현 등이 효율적인 운영을 모색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하며, 현행제도를 전제로 한 광역연합이나 합병의 실시, 더 나아가서는 도주(道州)의 도입도 검토하여 가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의 자주적 판단을 존중하겠습니다.

그 후에도 기초자치단체의 규모와 능력의 확대,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정리를 모색하고, 장래에는 다양성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중시한 지역주권국가를 지향하겠습니다.

조건부 보조금의 폐지와 일괄교부금



지방에 주어지는 보조금 등은 중앙관료에 의한 지방지배의 근원이며, 여러 가지 이권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등을 모두 폐지하고, 기본적으로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일괄교부금으로 바꿀 것입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제1보를 내딛기 위하여 “조건부보조금폐지법”을 성립시키겠습니다.

일괄교부금 중 현재 의무교육과 사회보장 등에 관한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금액을 확보하겠습니다. 현재 공공사업 등의 보조금 등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차시정의 관점에서 재정능력이 약한 지자체에 후하게 배분하겠습니다.

중앙, 지방 모두 보조금 등에 관련된 경비와 인건비를 대폭 삭감하여 재정의 건전화를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법률과 정성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구축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겠습니다. 법률과 정성령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정성령의 규정을 폐지 또는 지방조례로 변경할 수 있게 하거나 조례에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법률이나 정성령에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의 관점에 밀착한 형태로 사무, 사업의 기준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자치단체 간의 재정격차의 확대, 지방의 자원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재정조정, 재원보장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정부가 2004년부터 3년간 실시한 “삼위일체개혁”으로 약 5.1조엔의 지방교부세 및 임시재정대책채(臨時財政対策債)를 삭감한 것 등에 의하여, 자치단체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지자체는 어려운 재정운영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시작된 경기후퇴에 의하여 앞으로 지방의 세수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간의 격차를 시정하고 지방재정을 충실히 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제도와 일괄교부금의 통합을 포함한 검토과정을 거쳐, 현행의 지방교부세제도보다 재정조정 및 재원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한 새로운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국가직할사업의 지방 부담금제도 폐지



국가직할사업에 대한 지방 부담금제도는 지방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필요성에 관계없이 국가가 지방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으로부터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의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또한 폐지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액이 감소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가 종래 부담금에 충당하고 있던 재원의 사용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간 협인의 제도화



국가와 지방의 협의를 법제화하여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국가와 지방의 역할을 재검토 하는 등 지방분권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의 관계를 “상하 · 주종의 관계”로부터 “대등 · 협력의 관계”로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주민투표에 의한 민의의 수렴



주민투표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적절하게 이용하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여 주민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주민 스스로에 의한 거버넌스 형태의 결정



지역의 일을 지역에서 결정하는 지역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법률 등의 확실적인 규제를 최대한 철폐하며, 시티 매니저(city manager) 제도의 도입, 지방의회정수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변경 등 지역이 독자적인 판단으로 자치단체 및 의회의 구조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감사기능의 충실과 강화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 중 일정비율의 위원을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부터 선임하는 등 지자체의 감사위원제도와 외부감사제도에 충실을 기하고 강화함과 동시에 지자체의 공적회계제도의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166회 정기국회에서 성립한 지방재정건전화법에 의해 재정상황이 안 좋은 지자체는 재정건전화계획 등의 책정을 의무적으로 하게 된 것도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감사기능을 충실, 강화하고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의 효율화, 재정의 건전화를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입찰담합사건, 비자금문제, 부적절한 회계처리로 인한 자치단체의 재정과탄 등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사례를 없애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방인 재생



자공(自公)연립정권은 지방재정을 급격히 악화시켰고 지방경기침체에 대해 아무런 효과적인 대책도 강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은 피폐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부터의 경기후퇴는 지역경제를 더욱 위기적 상황으로 몰고 있습니다. 지방의 자유도를 크게 높임과 동시에 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지방이 주체가 된 지방재생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농림축산어업, 중소기업 재생 등을 통해 지방에서의 일자리를 확보하고, 의사부족에 대한 대책을 도입하여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하며, 잠정세율폐지, 고속도로 통행료의 무료화 등에 의한 생활경비의 절감 등에 노력하고, 과소지 등을 활성화하여 지방생활의 안심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지방재생을 위한 주요정책〉

- 농민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 축산, 낙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상제도의 도입
- 야채, 과일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조치 확립
- 자원관리의 강화 및 “어업소득보상제도”의 창설
- “산림관리, 환경보전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에 의한 삼림흡수원대책 등의 확실한 실행
- 직접지불을 통한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 어촌마을 활성화
-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목질 바이오매스(biomass)⁷⁾ 이용 및 활용 추진
-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
- 중소기업현장의 제정
- 공정한 시장 환경의 정비, “중소기업 이지메 방지법”의 제정
- 중소기업의 기술력 발휘 및 향상
- 지역산업과 고용을 지키는 중소, 소규모기업 지원세제
- 지역경제의 활성화
- 의사 양성수를 1.5배 증가, 현역의사의 유효한 활용으로 의료종사자 부족 경감
-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 유지
- 젊은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직업능력개발지원
- 잠정세율 폐지(자동차 관련 제세의 정리, 도로특정재원의 일반 재원화, 지구온난화 대책세, 도로행정 등의 근본개혁)
- 고속도로 무료화

7) 생태학의 용어. 어느 시점에서 임의의 공간 내에 존재하는 생물체의 양. 중량 또는 에너지의 양으로 표현.

커뮤니티의 재생과 강화



주민들이 단순한 공공서비스의 수혜자가 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공급자, 입안자가 되는 자치의 담당자로 참여하는 사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특히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거주 가정에 대한 순찰 등 지역주민 서로가 호조호혜(互助互惠)의 정신으로 실시하고 있는 봉사활동을 촉진하고, 과소지 등의 커뮤니티를 재생하고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커뮤니티의 중심적인 활동주체가 되고 있는 NPO가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세계개혁 등을 통해 재정기반강화를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국민의 시점에서 공공서비스의 재검토



국민의 요구에 대응하는 공공서비스 제공,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NPO 등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실현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서비스기본법을 제정했습니다.

법률의 내용은, (1)국민이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권리” 등을 가지고 있는 것, (2)국가, 지자체는 국민의 의견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공공서비스를 끊임없이 재검토 할 것, (3)국가, 지자체는 안전하고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 정비에 노력할 것, 등입니다.

기업, 단체헌금의 전면금지



기업, 단체헌금을 금지하고 정치 불신을 해소하겠습니다. 정치자금규정법을 개정하여 3년 후부터는 기업, 단체의 헌금 및 파티권 구입을 모두 금지하겠습니다. 그때까지의 당면조치로서,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1건 1억엔 이상의 공공사업이나 물품납입 등의 계약을 하고 있는 회사 등의 헌금 및 파티권 구입, (2)현재 헌금만을 금지당하고 있는 회사 등(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이나 출자 등을 받고 있는 회사나 적자회사 등)의 파티권 구입, 등을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기업, 단체가 그 임직원 등에 대하여 고용관계 등을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회비 상당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여 정치단체의 구성원이 될 것을 권유하고, 그러한 정치단체에 헌금 등을 시키는 것을 금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개인헌금을 보급, 촉진시키기 위해 현재 인정되고 있는 인센티브 이외에 연간 1천엔-5만엔까지의 헌금에 대해서는 전액 세액 공제하겠습니다. 또한 온라인 헌금의 추진을 모색하겠습니다.

세습정치로부터의 탈피



다양한 인재가 정치가가 되는 것을 저해하고 정치를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이른바 세습을 제한하겠습니다.

정치 분야에 널리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 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의원과 동일선거구에서 연속하여 입후보하는 경우 2009년 총선부터 민주당의 규칙에 의하여 이 친족을 공인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정치자금 면에서 후보자 간의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1)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의 대표자를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이 맡는 것, (2)국회의

원 관계 정치단체의 정치자금을 배우자 및 삼촌 이내의 친족 개인이나 그 국회의원 관계 정치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 을 법률로서 금지하겠습니다.

정치자금의 투명화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실태를 투명하게 하여 국민의 감시 하에 두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정치단체에 보통예금 등이나 보유하고 있는 현금의 잔액을 수지 보고서에 기재하게 하고, (2)정당 본부와 정치자금단체의 수지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하며, (3)인터넷을 통한 수지보고서가 공개되도록 총무성 등에 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치단체나 총무성 등이 수지보고서 등을 보존하는 기간을 연장하고, (4)정치단체가 영수증 등을 보존하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을 포함한 정치자금규정법 개정을 통하여 정치자금의 투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치현금의 규제강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현금에 관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05년 163회 특별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규정법 등의 일부 개정안에는, (1)소위 우회현금(정당이나 정치자금단체를 우회하여 기부를 받는 행위)을 금지, (2)정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정당, 정치자금단체에 대한 기부는 연간 1억엔까지로, 정당, 정치자금단체 이외의 동일한 정치단체에 대한 기부는 연간 3,000만엔까지로 함, (3)150만엔이 넘는 기부의 과실에 의한 수지보고서 등의 부기재에 대한 벌칙을 창설, (4)정치단체 간에 100만엔이 넘는 기부에 대해서는 은행송금을 의무화, (5)광고 게재료의 이름을 빌려 정치현금을 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후원회 등의 기관지에 대한 광고비의 상한을 연간 150만엔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의원 정수 80 삭감



정권선택이 가능한 선거를 실현하고, 소선거구 선거를 보다 중시하는 관점에서 중의원 비례의석 180중 80의석을 삭감하겠습니다.

또한, 1표의 격차확대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수배분”(소선거구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우선 47개 도도부현에 1의석씩 배분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소선거구 모두를 인구비례에 따라 결정함으로써 격차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의원 선거제도의 전면개혁



참의원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2013년을 목표로 선거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그 때, 중의원에 준하여 정수를 삭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1표의 격차가 4.858배(2007년 선거당일 격차)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선거제도개혁에 있어서 격차시정을 이루겠습니다.

선거권 연령 인하



선거권을 만 18세부터 부여하는 법률을 국민투표법에 포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보다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정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解禁)



정책본위의 선거, 돈이 들지 않는 선거의 실현, 후보자와 유권자의 대화촉진 등을 목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해금합니다.

민주당이 2006년 164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인터넷 선거운동 해금법안”을 성립시켜 정당이나 후보자는 물론 제3자도 홈페이지, 블로그, 메일 등 인터넷의 모든 형태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 행위에 대해서는, (1)비방, 중상을 억제하기 위해 홈페이지 등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의 이름, 메일주소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2)타인 명의 도용에 대한 벌칙을 마련하는 등의 치밀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자투표제도의 도입



지방선거에서만 실시 가능하게 되어있는 터치 스크린 전자투표기 등을 이용하여 투표하는 전자투표제도를 국정선거에도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는 선거사무의 효율화, 선거결과공표의 신속화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투표 데이터의 조작이나 장비의 결함에 대한 우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함에 있어서는 부정, 사고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을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의무화 하는 등 필요한 대책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영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민주당은 창당시의 “기본정책”에 “정주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등을 조기에 실현한다.”라고 하였으며 이 방침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여 가겠습니다.

정치가에 의한 알선 근절



현행 알선이득처벌법의 허점을 막아 정치가나 비서 등에 의한 알선을 근절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04년 159회 정기국회에 제출했던 “공직에 있는 사람 등의 알선행위로 인한 이득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에는, (1) 처벌의 대상에 공직에 있는 사람의 친족을 추가, (2) 범죄구성요건으로부터 “청탁”과 “권한에 기초한 영향력의 행사”를 제외하여 입건하기 쉽게 하고, (3) 정당지부 등을 이용한 ‘뇌물’의 우회를 금지하는 등의 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심의의 관료인준으로부터 탈피



국회심의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합니다. 국회의 위원회 심의에서 대신(장관)을 대신하여 관료가 ‘정부참고인’으로서 답변을 하는 국회심의를 관료의존을 고쳐나가겠습니다. 중참 양원의 위원회는 전적으로 의원만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국가공무원, 민간인 등으로부터 의견청취나 자료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아래 설치하는 소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다선제한



담합사건에 관련되어 다선의 단체장이 체포되는 등 단체장의 다선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등 헌법상의 문제에 유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4선 금지 제도화에 대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미 민주당은 2001년부터 4기 이상을 목표로 출마하는 도도부현 지사, 정령지정도시 시장에 대해서는 선거에서 추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



현재의 우정사업에는 국민생활의 편의성이 저하하고 있는 것, 지역사회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 사업을 담당하는 4개사의 향후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 등 심각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우정사업이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악화된 서비스를 개선함과 동시에 국민생활을 확보하고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국영이나 공사로 되돌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우정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에 들어가겠습니다. (1) '일본우정', '유우초(ゆうちょ⁸⁾은행', '칸포(かんぽ⁹⁾생명'의 주식매각을 동결하기 위한 법률(우정주식매각동결법안)을 가급적 신속하게 성립시키겠습니다. (2) 우정 각사의 서비스와 경영의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부채의 '우정사업 4개 분사화'를 재검토하여, 우체국서비스를 전국 두루 공평하게하고 고객 위주의 간편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재구축 하겠습니다. (3) 그 때는 우체국 우정 3사업의 일체적 서비스 제공을 보장하는 동시에 주식보유를 포함한 우정회사의 내용을 검토하고 우정사업의 편의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개혁을 실행하겠습니다.

'칸포의 숙소(かんぽの宿¹⁰)' 등의 일괄양도를 통해 처분할 곳의 결정과정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일본우정이 승계한 재산의 처분 등에 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8) 우편저금(郵便貯金, ゆうびんちよきん)의 줄임말

9) 간이보험(簡易保険, かんいほけん)의 줄임말

10) 간이보험에서 운영하는 숙소



NHK 직원에 의한 내부자 거래 등 NHK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불상사가 속출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경영개혁과 체질개선을 추진하고 NHK가 범령준수를 철저히 하도록 엄격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수신료 미불자의 존재에서 오는 불공평의 해소와 아직도 수입에 대하여 비율이 높은 수신료 징수비용의 절감을 위해 수신료의 형태와 수신료 징수방법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NHK의 업무범위가 국민에게 이해될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자회사에 대해서 설치기준을 재검토하여 정리를 추진함과 동시에, NHK 본사와 자회사의 계약방식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NHK의 각 채널의 위상을 다시금 분명히 한 뒤 BS 방송과의 삭감을 검토하겠습니다.

통신·방송위원회의 설치



통신, 방송행정을 총무성으로부터 분리, 독립성이 높은 독립행정위원회로서 통신·방송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신, 방송행정을 이양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국가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지닌 방송국을 국가권력이 감독하는 모순을 해소하고, 방송에 대한 국가의 자의적인 개입을 배제하게 됩니다.

또한 기술의 진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통신, 방송분야의 규제부문을 같은 독립행정위원회로 옮기며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겠습니다.

게다가 통신, 방송의 융합 및 연계서비스의 발전에 따른 국민이익의 향상, 그리고 우리나라 정보통신기술(ICT)산업의 국제전개를 도모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통신에 관련된 법체계가 규제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가겠습니다.

통신·방송행정의 개혁



최근의 기술혁신에 의하여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진전되고 있어 기존의 통신, 방송에 관한 법체계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의 통신, 방송 융합시대에 대응한 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동시에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는 현상을 고려하며 표현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크로스 미디어 소유(동일한 사람이 신문, TV, 라디오 등 복수의 미디어를 소유하는 것)의 옹고 그름을 포함한 매스미디어 집중배제원칙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전파의 유효이용



산업 활성화 및 새로운 기술개발, 국민의 편리성 향상을 위해 유한자원인 전파(주파수)의 유효이용에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이용자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수요에 대한 신속한 재배분을 위해, (1) 전파이용료에 전파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함으로써 전파의 효율적 이용촉진, (2)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옥션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포함한 주파수 할당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 등을 하겠습니다.

정보격차의 해소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재해대책을 비롯해 원격의료를 가능하게 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등 일상생활에서뿐 아니라 기업의 활동에서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가 늦어지는 곳이 있으며, 정보격차의 확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정보네트워크의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정보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건불리지역 등에 대한 정비지원책 등을 통하여 필요한 환경정비와 지원을 실행하겠습니다.

지상 디지털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



2011년 7월 24일 지상 아날로그 TV 방송은 종료되고 지상 디지털 TV 방송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지상 디지털 방송에 대응할 수 있는 TV나 튜너를 가지고 있는 세대는 아직 절반 정도입니다. 또한 산악 지역이나 낙도 등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볼 수 없는 지역도 남아있습니다.

지상 디지털 방송으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1)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등을 통한 디지털 방송 수신에 관한 상담체제의 강화, (2)저렴한 튜너의 개발 촉진 및 경제적 약자에 대한 튜너 구입지원, (3)전파가 닿지 않는 과소, 낙도 지역 등의 중계국 설치에 대한 지원, (4)도시지역 등에서 고층빌딩 등이 장애가 되어 전파가 닿지 않는 경우의 공동안테나 등의 설치에 대한 지원, (5)환경을 배려한 지상 디지털 방송 대응 기기에 대한 대체구입 촉진책 도입, 등 필요한 환경정비와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인터넷을 사용한 콘텐츠의 2차이용 촉진



과거에 방송된 TV 프로그램(콘텐츠)을 인터넷에서 2차이용하는 경우에는 모든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하기 때문에 2차이용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콘텐츠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저작권 보호를 배려하면서 원활한 저작권 처리를 위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권리처리가 곤란한 과거 콘텐츠의 재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조속히 검토하겠습니다.

법조양성제도의 검증과 사법제도개혁의 추진



법조인구의 대폭적인 증가라는 관점에서 연간 사법시험합격자를 3,000명으로 하는 목표가 세워졌고, 또한 법조의 질 향상을 위해 2004년부터 로스쿨을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법조양성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법학 전공자의 새로운 사법시험합격률의 침체, 수습종료 시의 고시(2차 시험) 낙제자의 급증, 변호사 지망의 '취직난' 등의 문제가 지적되게 되었습니다.

법조의 질을 유지하면서 적정규모의 법조인구를 확보하기 위해, 로스쿨, 새로운 사법시험, 예비시험, 법조인구의 본질 등에 대해서 프로젝트 팀을 설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2006년에 업무를 시작한 일본사법지원센터의 지역사무소의 정비와 법률직원(상근 및 당번 변호사, 사법서사)의 확보 및 증원, 피의자국선변호제도와 민사법률부조제도(民事法律扶助制度)에 충실을 기하겠습니다.

재판원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한 환경정비



2009년 5월 시행된 재판원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계속하여 홍보에 노력함과 동시에,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 녹화에 의한 가시화, 검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목록 공개 등 재판원 재판의 장기화를 방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 불가결한 환경정비를 서두르겠습니다.

또한 재판원 사퇴사유의 탄력적 운용, 수비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적용의 제한, 사형판결 방법의 재검토, 재판원 일당 인상 등 재판원이 되는 국민의 부담경감을 위한 제도의 재검토에 즉시 임하겠습니다.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공금검사청구소송(公金檢査請求訴訟)의 창설 등을 검토하여 행정에 대한 감시를 보다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159회 정기국회에서 행정사건소송법이 개정되어 의무부여소송(義務づけ訴訟), 금지소송(差止訴訟)의 법정화와 원고적격의 확대 등 사법에 의한 행정감시 기능의 강화를 도모했습니다만, 더욱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소송제도의 제2탄 개혁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취조의 투명화, 증거공개인 철저로 원죄(冤罪) 방지



경찰, 검찰 등에서 피의자 취조의 전 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 등을 통하여 취조를 가시화(可視化)하며, 공정하고 투명성이 높은 형사사법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토야마히미(富山水見)사건¹²⁾이나 시부시(志布志)사건¹³⁾, 아시카가(足利)사건 등의 원죄사건이 잇따라 드러났습니다만, 이러한 사건의 가장 큰 문제는 밀실에서 취조하는 것입니다. 취조과정에서의 자백강요에 의한 원죄를 방지하기 위해, (1)재판에서 자백의 임의성에 대한 것이 쟁점이 된 때 검증할 수 있도록 취조의 전 과정을 녹음, 녹화하도록 수사당국에 의무를 부여하고, (2)형사재판에서의 철저한 증거공개를 도모하기 위해 검찰관이 가지고 있는 증거의 일람표를 작성,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11) 억울한 죄

12) 토야마현 히미시에서 일어난 강간 및 강간미수 사건의 용의자로 체포된 택시운전사가 용의를 인정하고 2년간 복역하였지만, 나중에 진범이 나타나 토야마현 경찰이 택시운전사의 혐의 없음을 인정하고 사죄한 사건.

13) 시부시사건은 2003년 4월 13일 실시된 통일지방선거에서 가고시마(鹿児島)현의회 의원에 당선된 나카야마 신이치(中山信一) 의원 진영이 시부시(志布志)마치의 마을에서 주민에게 소주와 현금을 돌렸다고 하여 나카야마와 그 가족, 주민들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된 사건을 둘러싼 수사에서 가고시마현 경찰이 자백을 강요하고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이례적인 장기구류 등의 위법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 사건을 말한다.



공모죄를 도입하지 않고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의 비준절차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하기 위한 국내법 정비로써 공모죄를 신설하는 법안을 계속해서 국회에 제출해 왔지만, 민주당은 공모죄에 반대하는 국민의 광범위한 여론과 연계하여 법안의 성립을 막아 왔습니다. 공모죄는 단체의 활동으로써 범죄수행을 공모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지만, 범죄 실행의 착수나 준비활동이 없이 상담을 한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는 것, 국제적 성격과는 무관한 범죄나 중대범죄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포함한 619의 범죄가 대상이 되는 등, 우리나라의 형법체계를 근본적으로 뒤엎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조약은 “자국의 국내법의 기본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조약이 정하고 있는 중요범죄의 대부분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행법에서 이미 예비죄, 준비죄, 방조죄, 공모 공동정범(共謀共同正犯)¹⁴⁾ 등의 형태로 공모를 범죄로 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모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유엔 조직범죄방지조약을 비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년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가정, 학교 등 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정비, 조기 발견을 위한 네트워크, 안심하고 상담할 수 있는 구조, 가정재판소의 충실강화, 보호관찰관의 증원, 소년원, 갱생시설을 나온 후의 취로, 사회복귀 지원책 강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비행소년의 성장과 치유”라는 소년법의 이념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14) 2인 이상의 사람이 범죄를 공모하여 그 중 누군가가 공동의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행에 옮겼을 때, 실행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던 사람을 포함하여 전원이 주범으로써 처벌되는 것

‘중신형’ 검토를 포함한 형벌의 재검토



사형존폐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실시함과 동시에, 중신형을 검토하고 가석방제도의 객관화와 투명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사형 존치국이 선진국 중에는 일본과 미국뿐이며, EU 가입조건으로 사형폐지가 있는 등 국제적인 동향에 주시하면서 사형 존폐문제뿐만 아니라 당면의 집행정지와 사형의 고지, 집행방법 등을 포함하여 국회 안팎에서 폭넓게 논의를 계속하여 가겠습니다.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는 중죄사안 중 특히 악질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공소시효의 중단을 인정하는 제도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인규명제도개혁의 추진



범죄사체, 비범죄사체 구별 없이, 변사체(비자연사체)에 대해서 사인규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 “사인규명 2법안”의 성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약 17만의 비자연사체에 대한 부검율이 약 10%에 그치는 등 사인규명제도가 외국에 비해 빈약하고, 범죄사나 사고사를 병사나 자살로 잘못 판단하는 등의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변조사, 의학적 조사의 정확성을 높임으로써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사고 등의 재발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겠습니다.

재범방지대책의 강화



형사시설의 과잉수용상태의 해소, 수용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직원체제의 정비, 적절한 의료체제의 정비, 교정처우 프로그램의 충실, 사회복귀를 위한 직능 교육, 취로지원, 보호관찰체제의 충실 등 재범방지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성 정체성 장애인의 인권존중



성정체성장애자특별법(性同一性障害者特例法)을 구체적으로 더 검토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어도 성별의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의 성’과 ‘신체의 성’의 불일치로 고통 받는 성 정체성 장애인에 대해 일정한 조건에서 호적법의 ‘성별 기재’의 정정을 인정하는 특별법이 2003년에 만장일치로 성립되었으며, 2008년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도 자녀가 성년에 도달한 경우에는 성별 변경이 인정되도록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와 지식인들로부터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성별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여, 개정 부칙의 검토 조항에 따라 법률의 개정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적선택제도의 재검토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위한 국적선택제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1984년 국적법 개정에 따라 ‘국적선택제도’가 도입되어 외국인과 결혼이나 외국에서의 출생에 의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일본인은 일정한 시점에서 일본 국적과 외국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 출생한 사람이 그 선택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으며, 취로와 생활, 부모의 간병 등을 위해 양국 사이를 왕래하는 기회가 많고, 부모 쌍방의 국적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받아드리고 싶다는 사정 등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해달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를 바탕으로 국적선택제도를 재검토 하겠습니다.

성년연령 18세로 인하



민법의 성년연령, 소년법의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추는 것과 동시에 다른 분야의 법률, 제도에 대해서도 새롭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사

람을 성년으로 취급하는데 필요한 법제상의 검토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007년 성립한 헌법개정국민투표법에서 투표권 연령이 18세로 결정됨에 따라, 동법 부칙에는 국가는 공직선거법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민법의 성년연령도 18세로 낮추며, 기타 관계법령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이 법이 시행되는 2010년까지 필요한 법제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인권침해 구제기관의 창설



인권침해를 허용하지 않고 그 구제를 신속하게 실현하는 기관을 창설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05년 162회 정기국회에 제출한 “인권침해에 의한 피해의 구제 및 예방 등에 관한 법률안”(인권침해 구제법안)에는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중앙인권위원회, 각 도도부현에 지방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인권침해에 관련된 당사자에 대한 조인과 지도 등의 일반구제절차와 조사, 조정, 중재 등의 특별구제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도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특별구제절차의 대상으로 하지 않고 자주적 구제제도를 만들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난민인정위원회 창설, 난민생활 지원



선진국 중에서 가장 차고 엄격하다는 일본의 입국, 난민인정행정, 난민에 대한 생활지원, 난민신청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난민 등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1981년에 비준한 난민조약의 취지에 따라 적정하고 신속한 난민인정을 하기 위해 난민인정행정을 법무성으로부터 분리하여 내각부 외국으로 난민인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난민인정신청자 나 재류난민 등의 생활 지원에 관한 법적규정을 정비하겠습니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UNHCR)가 인정한 난민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침해구제를 위해 국제기구에 대한 개인통보제도를 도입



인권침해구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국제기구에 대해 개인이 직접 인권침해의 구제를 요구하는 제도(개인통보제도)가 적용되도록 정권획득 후 신속하게 관계조약의 선택의정서 비준 등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인통보제도를 규정하는 인권조약에는 여성차별철폐조약 선택의정서, 자유권규약 선택의정서, 고문금지조약 22조, 인종차별철폐조약 14조가 있습니다.

등기소 지도정비를 추진



메이지 초기에 만들어진 지도를 아직도 등기소의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등기소의 지도에 기재된 경계와 현황이 크게 달라져버린 지역이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정비에 대한 국가책임을 명확히 하고, 경계특정절차의 직권개시제도 도입 등 정확한 등기소 비치지도의 정비를 가속화 하겠습니다.

사비사(servicer)¹⁵⁾의 강제적 징수활동에 대한 규제



사비사의 강제적인 채권회수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사비사법을 개정하여 금지되는 징수행위를 명시하고 벌칙을 전반적으로 강화시키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채권회수에 임할 때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과 재건, 생활의 유지, 보증인의 자금력 등에 유의, (2)보증인에 대한 채권양도 등의 통지의무를 명확히 규정, (3)대금업법(貸金業法)에 준하여 징수행위에 관한 규제 내용을 명시하고 벌칙을 전반적으로 올리는, 등의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15) 채권회수 전문회사를 말함.

새로운 시대의 일미동맹의 확립



일미양국의 대등한 상호신뢰관계를 형성하여 새로운 시대의 일미동맹을 확립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주체적인 외교 전략을 구축하고 일본의 주장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대화하고 대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역할을 분담하면서 그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가겠습니다.

미국과의 사이에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해나가겠습니다.

일미지위협정의 개정을 제기하고 미군재편과 주일미군기지의 등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아시아 외교의 강화



중국,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와의 신뢰관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공동체의 구축을 목표로 통상, 금융, 에너지, 환경, 재난 구호, 감염방지 등의 분야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역내 협력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와의 사이에 투자, 노동이나 지적재산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한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 강화



동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한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은 6자회담의 당사국이기도 하며, 양호한 한일관계의 재구축은 북한에 의한 납치, 핵, 미사일 문제의 해결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동아시아 및 세계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양국의 신뢰 관계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서 한중일 3개국의 강력한 신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가겠습니다. 한일 FTA 체결과 독도 문제의 해결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중관계의 심화



중국은 일본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이며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더욱 우호협력관계를 촉진하겠습니다.

양국 간에는 식품안전, 인권, 환경, 에너지, 군사력의 투명화, 동중국해 가스전 개발 등 현안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양국정상 간의 견고한 신뢰관계를 형성하여 현안이 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대화에 의한 문제해결을 시도하겠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6자회담이나 북중 간에 중국이 더욱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재촉하겠습니다.

민주당과 중국 공산당 간의 설치한 '교류협의기구'를 통해 양당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의를 통하여 신뢰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하겠습니다.

대만과의 교류



대만과 민간 레벨에서 경제적,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겠습니다.

2005년 일미안전보장협의위원회 공동발표에서 공통의 전략목표로서 대만에 관한 기술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대만의 일방적인 독립을 지지하지 않고, 동시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무력행사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생기지 않도록 중국과 대만에 모든 예방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중 하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1972년의 일중공동성명이 전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대북한 외교의 주체적 전개



북한의 반복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우리나라 및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명백한 위협으로 결단코 용인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게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보유, 배치를 포기하게 하기 위해 한미중러 등의 국제사회와 협력하면서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라 화물검사의 실시나 북한에 대한 추가제재의 실시도 포함하여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남치문제는 우리나라에 대한 주권침해이자 중대한 인권침해로 국가의 책임 하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러일관계의 심화



경제, 문화교류의 활성화와 자원개발협력 등을 통해 일러관계를 심화시켜겠습니다. 북방영토의 조기반환을 위해, 끈질기게 교섭에 임하겠습니다. 또한 6자회담 당사국으로서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 더욱 협력을 구하겠습니다.

영토문제의 조기 해결



영토문제의 해결은 곤란을 동반하며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이 있는 북방영토, 독도문제의 빠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끈질지게 대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해적대책과 해양안전보장



해상운송의 안전확보와 국제공헌을 위해 적절한 절차로 해적대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해적대책은 일차적으로는 해상보안청의 책무입니다. 해양안전보장을 위해 해상보안청의 체제정비를 모색하겠습니다. 그러나 해상보안청만으로 대응이 곤란한 경우는 시빌리언 컨트롤을 철저히 하는 구조를 정비한 후에, 해적발생 해역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도 인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해상경찰의 연계의 촉진, 관계 외국의 해상경찰의 능력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해적행위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국제협력을 실시하겠습니다.

테러근절과 평화구축을 위해서



테러와 그 온상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빈곤의 근절과 해당 국가의 '국가로서의 재건'에 일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합니다.

NGO와도 연계하면서 경제적 지원, 경찰행정개혁을 포함한 통치기구의 강화, 관개 사업, 의료, 물자수송을 포함한 인도부흥지원활동(人道復興支援活動) 등의 실시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스라엘 · 팔레스타인의 평화합의를 향하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정치정세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진정한 중동평화 실현을 위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조기에 평화에 대한 합의가 달성되도록 유엔과 미국을 비롯한 관계국과 함께 양측에 적극적으로 권유해 가겠습니다. 또한, 국제협력기구(JICA)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대 팔레스타인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부흥과 신뢰양성을 촉진하겠습니다.

유럽 · EU와의 관계강화



유로 통화통합과 EU확대 등 유럽이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과 유럽 각국, EU와의 관계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정책동향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한편, 국제테러대책에서의 협조, 세계무역기구(WTO), 경제연계협정(EPA), 자유무역협정(FTA) 교섭, 환경문제 등에 대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및 주요국 정상회의(G8) 등을 통해 상호연계의 강화 및 심화를 도모해 가겠습니다.

ODA의 활용, '인간의 안전보장' 등에 대한 대처



심각해지는 세계의 빈곤문제와 '인간의 안전보장'의 실현은 일본의 국제협력분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한 나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사막화, 난민, 빈곤, 감염 문제와 같은 '인간의 안전보장'에 대한 대처, 미얀마와 짐바브웨를 비롯한 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정부개발원조(ODA)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상대국의 자연환경보전과 생활환경의 정비에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일본이 지구환경보전에 세계를 리드하는 지위를 쌓아 가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나 외부감사, 업무평가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다른 원조국이나 국제기구

등과의 협조, 연계를 심화함으로써 원조대상국의 요구에 맞는 원조를 해나가겠습니다. ODA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자금 메커니즘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점적인 지원도 중요하여, 각국과 협조하여 2015년까지의 밀레니엄 개발목표(MDGs)의 달성을 위해 일본의 행동계획 책정이나 ODA의 적극 활용을 포함한 지원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제협력에 있어 NGO가 수행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평가하여 개발원조정책의 책정, 실시에 대한 참여확대 등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유엔개혁



유엔은 분쟁해결능력의 한계와 비효율적인 운영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유엔이 국제평화, 안전과 번영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하도록 유엔개혁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착화된 유엔개혁을 근본적으로 고쳐서 안보리의 구성과 거부권을 재검토하고 적국조항의 철폐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내여론과 가맹국의 지지를 전제로 우리나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유엔과의 연계강화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본인 유엔직원의 증가를 요구하여 하겠습니다.

핵 폐기를 이끈다



유일한 피폭국으로서 세계의 핵 폐기를 향해 일본이 선두에 서서 이끌고 행동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도하여 핵보유국의 이해를 요구하고 비핵보유국가와 NGO 등과 연계하면서 핵 근축에 노력하고 실효성 있는 사찰체제의 확립을 포함하여 핵확산금지체제의 강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9년 4월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핵 없는 세계'에 관한 연설을 한 것을 계기로, 2010년에 예정되어 있는 핵확산금지 조약(NPT) 재검토회의에서 NPT체제의 유지, 강화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미·인도 원자력 협정을 둘러싸고 NPT 미가맹국인 인도에 대한 수출규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NPT체제의 형해화를 초래함과 동시에, NPT 미가맹국인 파키스탄과 이스라엘, NPT를 탈퇴하고 핵개발을 추진중인 북한, NPT에 가입한 채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는 이란에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인도에 NPT 가입을 강하게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여론도 조성하여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조기발효와 무기용 핵분열성물질생산금지(cut off) 조약의 추진, 동북아시아의 비핵화 등 핵 폐기, 핵군축 핵 불확산 노력을 계속하여 가겠습니다.

미사일 방위에 대한 대응



미사일 방위는 그 필요성을 감안, 억지적 효과, 정치적 효과와 일미동맹강화, 기술적 가능성, 비용대비효과 등 종합적인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09년 4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처음으로 요격 미사일의 실전배치가 있었습니다. 미사일 발사정보의 오탐지, 정보전달체제의 불비 등 드러난 문제점을 감안하면서 자위권 행사를 비롯하여 시빌리언 컨트롤(civilian control)을 철저히 한다는 견지에서 국회의 관여, 국민에 대한 공포, 요격의 원칙 등에 대해서 더욱 검토하겠습니다.

정보의 수집분석, 관리보전의 적정화



전수방위를 국시로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정보수집, 분석, 대응능력의 향상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불심선박, 무장 공작선이나 미사일 발사의 의도, 북방영토에서의 어선나포 등 우리나라에 대한 위협, 협박을 사전에 감지하여 전문가에 의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이며 철저한 정보수집, 분석을 수행하는 조직의 근본적인 강화가 필수입니다.

한편 국민의 안전이나 시빌리언 컨트롤을 확보해 가는 견지에서 정보의 공개기준과 보전의 방식을 재검토하여 정보관리의 적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자위권 행사는 전수방위에 국한



일본국 헌법의 이념에 근거하여 일본 및 세계의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위권은 지금까지 개별적, 집단적이라는 개념상의 논의에 구속되지 않고, 전수방위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급박하고 불법적인 침해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헌법 제9조에 따라 행사하기로 하고, 그 이외에는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유엔평화활동에 적극참여



유엔은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반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인류의 커다란 재산이며, 이것을 중심으로 세계평화를 구축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엔의 평화활동은 국제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헌법의 이념에 부합되며 또한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와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유엔헌장 제41조 및 42조에 의한 것을 포함하여 유엔의 요청에 따라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판단과 민주적 통제 아래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겠습니다.

방위성 개혁



방위성의 근본적인 개혁이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먼저 시빌리언 컨트롤의 철저와 방위조달의 투명화, 오프셋(off set)¹⁶⁾ 거래의 검토를 포함하여 적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자위대원의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자위대 활동의 국민에 대한 이해를 모색하겠습니다.

16) 무기 등의 수출시 상대국 정부 또는 기업에 대하여 경제적인 보상을 약속하는 것.

재정구조개혁의 추진



재정건전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의 기초적 재정수지의 흑자를 피하고, 채무잔고GDP(국내 총생산) 비율을 착실하게 줄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치주도의 예산편성에 의한 예산의 전면적 변경, 지방분권의 추진, 불요불급, 비효율적인 사업의 폐지와 국민요구에 맞는 정책에 대한 예산을 중점배분 하겠습니다.

또한 세금 재원뿐만 아니라, 연금 보험료의 낭비를 시정하기 위해 사회보험청을 폐지, 해체하고 업무를 국세청에 흡수하여 세입청을 설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조달비용을 최소화하고 계획적인 채무상환을 하기위해 채무관리청의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을 재검토



민주당 정권에서는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가가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현재 예산편성은 성청이 종적으로 '전년도 대비'라는 생각으로 만든 내용을 단순히 모아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관저에 각성 대신 등을 모아 놓고, 예산편성의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성청별로 정치가가 주도하여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전환해야만 불필요한 공공사업의 삭감이나 수직적 행정의 폐해를 없애고, 민의를 반영한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산도 예산과 같은 수준의 상세한 자료제출을 의무화하여 엄격하게 진행합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결산 및 회계령(예결령)으로 예산제출 후 각목명세서(各目明細書)를 재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결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예산의 적산(積算)이 적정했는지 아닌지는 결산을 보고도 평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결령을 재검토하여 세출예산에 대해서 재무대신에게 제출이 의무화되어있는 각목명세서와 같은 수준의 서류를 결산에 대해서도 재무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결산을 정사(精査)함으로써 예산의 적산이 적정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검사원의 독립성 향상, 회계검사의 공정중립성 확보, 검사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회계검사원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회계검사원의 독립성 향상, 회계검사의 공정중립성 확보의 관점에서 각 성청과 국가가 2분의 1 이상 출자하고 있는 법인 등(필요적 검사 대상기관)에 종사한 적이 있는 사람을 검사관 임명 가능대상자로부터 원칙적으로 제외하겠습니다.

동시에 검사업무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1)실지 검사한 사항과 결과를 검사 보고에 기재하고, (2)부당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 등을 취하고, (3)징계처분이 요구 가능한 경우의 요건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확대하며, (4)국민들이 회계검사원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등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복잡하고 정보공개가 불충분한 국가의 회계 및 재무내용을 투명하게 하는 개혁을 실시하여 적절한 예산편성,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예산편성과정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집행을 엄격하게 관리하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해 발생주의(發生主義), 복식부기(複式簿記)에 의한 재무서류 등의 작성 및 재무정보의 공개를 법률화하여 제출시기를 앞당기는 ‘공회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별회계제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하며, 또한 각 성청의 “숨겨진 지갑” 역할을 하여 거액을 낭비하는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낭비를 끝내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재정재건 특별회계’, ‘교부세 특별회계’ 등에서 간소화하겠습니다.

또한 부정경리의 방지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1)예산집행 직원의 변상책임의 범위를 넓히고(‘고의 또는 과실’로 확대, 제척기간 규정의 삭제), (2)예산집행직원에게 관한 징계처분의 요구를 회계감사원의 의무로 하는 등의 법 개정을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우리나라 기업, 가계의 자금유통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 가계의 자금유통을 지원하기 위해, (1)신용보증 대상 업종을 확충하고, (2)중소기업에 대한 검사매뉴얼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며(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3)주택 론 등의 상환조건 완화를 지원하는 등의 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겠습니다.

건전한 금융시장 육성



증권거래등감시위원회를 개편하여 독립성이 높고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폭넓은 금융상품거래를 감시하는 ‘금융상품거래 감시위원회’를 설립하고, 인재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의 국제적인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저축에서 투자로’의 흐름을 가속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투기꾼에게 교란되지 않는 건전하고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공개회사법 제정



주식을 공개하고 있는 회사 등은 투자가, 고객과 노동자, 지역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개회사에 적용되는 특별법으로서 정보공개나 회계감사 등을 강화하고 건전한 거버넌스(기업 통치)를 담보하는 공개회사법의 제정을 검토하겠습니다.

포괄적인 금융서비스·시장법의 제정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 판매되기에 이르러 금융상품에 관한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은행, 증권, 보험, 상품(현물, 선물)회사 등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금융상품에 대한 포괄적이고 횡단적인 투자가 보호법제의 정비를 모색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을 향한 금융검사 매뉴얼의 탄력화



중소기업금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보에 편중되지 않고 자금흐름에 중점을 둔 용자를 권장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향한 검사매뉴얼의 탄력화 조치(이자지급이 이루어지는 한에서는 부실채권으로 분류하지 않는 등) 등을 강구, 신용경색에 의해 대출을 억제하는 점을 해소시키겠습니다.

지역금융원활화법 제정



지역에 대한 공헌도나 중소기업에 대한 용자조건 등의 정보공개를 통해 금융기관 간의 건전한 경쟁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금융원활화법'을 제정하겠습니다.

NPO뱅크, 소규모 공제의 부담경감



시민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복지나 환경 등 지역 활동에 용자하는 NPO뱅크와 같은 소규모,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 대금업법의 자산요건 적용을 제외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취급하기 어려운 특정 위험에 대응한 보험이나 저렴한 리스크 이전수단 등을 제공하고, 일정한 사회적 의의를 가지는 소규모, 단기의 '자주 공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엄격한 보험업법상의 '보험업'과는 구별하겠습니다.

세제개정과정의 전면개혁

세제개정에 대해 ‘공평·투명·납득’이라는 납세자 관점의 원칙 아래에서 정치주도의 정책결정을 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의 과정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기존의 세제개정논의는 여당 세제조사회, 정부 세제조사회, 경제재정자문회의에 의해 각각 논의되어 왔습니다. 특히 여당 세제조사회는 불투명한 형태로 정책결정을 하여 기득권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여당 내의 세제조사회는 폐지하고, 재무대신 아래에 정치가를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정부 세제조사회를 설치하여 정치가가 책임지고 세제개정작업 및 결정을 하겠습니다.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방(6단체¹⁷), 총무대신, 새로운 정부 세제조사회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합니다. 종래의 정부 세제조사회는 폐지하고, 대신 세제의 전문가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에 대한 조언을 하는 전문가위원회를 새로운 정부의 세제조사회 아래에 놓습니다. 이러한 의견의 집약과정은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국회에서의 심의도 충실하게 하기위해 중참양원에 세제를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등도 포함한 세입전반을 논의하는 상임위원회로써 ‘세입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중참양원의 다음 년도 세제개정 논의에 기초하여 정부는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세 · 사회보장 공통번호 도입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국민생활의 안정,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람에 맞는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적절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혹은 과도한 사

17) 전국지사회, 전국시장회, 전국정촌장회, 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의회의장회를 말한다.

회보장의 급여를 회피하는 것이 요구되어집니다. 이를 위해서 불가결한 납세와 사회보장급여에 공통의 번호를 도입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현장의 제정과 경정(更正)기간제한 검토



국민의 납세자로서의 의식을 높이고 보다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해 나가기 위한 제일보로, 확정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급여소득자에 대해서는 연말조정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실현하는데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현장’을 제정하겠습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혁으로, 납세액의 경정 등의 기간제한이 과세청(課稅庁)으로부터 경정과 납세자로부터의 수정이 다른 점에 대해서는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과세청의 증액경정(사후 납세액의 증액)의 기간제한이 5년인 반면, 납세자로부터의 경정청구(사후 납세액의 감액)의 기간제한이 1년인 것은 납세자의 이해를 얻기 어려워 조속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국세불복심판에 대한 재검토



납세자의 권리를 중시하여 국세불복심판소의 방식과 절차를 재검토하겠습니다.

세금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생각하면 개별 과세사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납세자의 주장을 듣는 국세불복심판소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러나 현재상황은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히 그 기능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심판관이 대부분 재무성, 국세청 출신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외에도 증거서류의 열람, 복사가 인정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국세심판의 방식과 그 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권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 유리한 소득공제를 정리하고, 세액공제, 수당, 급여포함의 세액공제로 전환하여 아래에 대한 격차확대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양공제는 육아지원기능을 보유하고 있지만, 같은 38만엔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 고소득자가 10만엔을 넘는 감세가 되는데 대하여 저소득자에게는 2만엔의 감세도 되지 않습니다.

한편, 소득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세액에서 일정액을 떼내는 세액공제나 소득 공제로부터 수당으로의 전환은 중·저소득자에게 유리한 정책입니다.

급여포함 세액공제는 세액공제 금액보다 세액이 낮은 경우 공제하지 못한 금액의 일정비율을 급여로 주는 것으로, 세액공제와 수당이라는 성격을 겸비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적절히 조합하여 아래에 대한 격차확대를 멈추게 하겠습니다.

인적공제에 대해서는, ‘공제에서 수당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육아를 사회 전체가 지원하는 관점에서, ‘배우자 공제’, ‘부양 공제(고교생,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부양공제, 노인부양공제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아동수당’으로 전환합니다. 그 때는 연금생활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연금과세의 재검토도 하겠습니다.

급여소득공제에 대해서는 특정지출공제를 사용하기 쉽게 함과 동시에, 현재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적용소득의 상한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재검토하겠습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 ‘노년자 공제’는, 2004년 개정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겠습니다. ‘공적연금 등 공제’에 대해서 65세 이상인 분의 최저보장액을 120만엔에서 140만엔으로 올리는 동시에 50만엔을 소득공제하는 ‘노년자 공제’를 부활시키겠습니다. 단 적용에는 소득제한을 설정합니다. 이 조치로 배우자 공제를 정리한 경우에도, 연금생활자의 부담은 증가하지 않습니다.



주택론 감세에 대해서는 최대공제 가능액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리어프리(barrier free)와 에너지 절약 등 사회적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중점적인 부담경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자신의 자금으로 주택을 신·개축, 구입한 경우에도 주택론 감세와 같은 정도의 부담경감을 받을 수 있는 제도(투자감세)를 창설하고 베이비붐 세대 등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생명손해보험 등 민간보험회사의 보험료 공제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제도를 보완하는 유족, 의료, 간호, 노후(연금) 등의 보험 상품에 대응하는 새로운 보험료 공제제도를 창설하고 소득공제 한도액을 소득세에서 15만원 정도로 올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소득공제를 정리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확실하게 지원할 수 있는 급여포함 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생활보호 등의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와 함께, (1)기초공제를 대신해 ‘저소득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제공하는 급여포함 세액공제’, (2)소비세의 역진성 완화대책으로서 기초적인 소비지출에 소요되는 소비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고, 공제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는 ‘급여포함 세액공제’, (3)취로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른 ‘급여포함 세액공제’의 금액을 증액하여 취로에 의한 수입 이상의 실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형태로 ‘취로를 촉진하는 급여포함 세액공제’의 어느 하나를 목적 또는 그 조합의 형태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단, 부정환급,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득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며, 납세와 사회보장급여에 공통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합니다.

또한 세액공제액 전액을 공제할 만큼의 세액이 없이 급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은 우선 연금과 의료 등 사회보험료 부담분과 상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금융소득과세 개혁추진



본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가 바람직하지만, 금융자산의 유동성 등을 고려하여 당분간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로 하고, 손익통산(損益通算)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권세제의 경감세율은 경제금융정세 등을 고려하여 당면 유지하겠습니다.

소비세 개혁추진



소비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그 세수를 결코 재정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약속하고, 국민에게 확실하게 환원이 되는 사회보장 이외에는 충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법률상으로도 회계상으로도 명확히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세율 5%를 유지하고 세수전액 상당분을 연금재원으로 충당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일정정도의 연금을 보장하는 '최저보장 연금'이나 국민개보험(國民階保險)을 담보하는 '의료비'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확실하게 제공하기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사회보장목적세화나 그 사용처인 기초적사회보장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이 검토의 전제가 됩니다. 그런 다음 인상폭이나 사용처를 분명히 하여 국민의 심판을 받고 구체화하겠습니다.

인보이스(invoice) 제도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부담한 소비세가 제대로 국고에 납세되도록 하겠습니다.

역진성 대책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급여포함 소비세액공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이것은 가계조사 등 객관적인 통계에 따라 연간 기초적인 소비지출에 소요되는 소비세 상당액을 일률적으로 세액공제하고, 공제를 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급여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에 의해 소비세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세율을 가능한 한 낮게 억제하면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소비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조세특별조치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하는데, 이를 추진하여 과세기반이 확대되었을 때 기업의 국제경쟁력 유지, 향상 등을 감안하면서 법인 세율을 조정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조세특별조치를 조정하는데 있어서 연구개발의 촉진 등 진정으로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시한조치에서 영구적 조치로 전환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온난 화를 비롯한 환경대책, 고용유지와 확대, 지자체의 연구와 노력 등에 의한 지역활성화 등의 중요과제에 대한 대응을 법인세제에서 충당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결손금의 반복환급제도(繰戻還付制度)는 동결을 해제하겠습니다.



조세특별조치에 대해 감세조치의 적용상황, 정책평가 등을 밝힌 후에 영구화 또는 폐지의 방향성을 명확히 하는 ‘조세특별조치투명화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본래 지불해야 세금을 감면하는 점에서 조세특별조치는 실질적인 보조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조사 결과 세무당국도 요구관청도 이 조치의 필요성이나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아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은 전혀 수행하지 않은 실태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조세특별조치의 투명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치를 포함한 실질적인 부담수준을 분명히 하여 그것으로 과세기반이 확대된 경우에는 법인세율의 수준을 재검토하여 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세제



중소기업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이하는 중에 사업승계에 불안을 안고 있는데, 이를 중점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인세의 경감세율은 당분간 11%로 합니다.

'1인 오너회사(특수지배 동족회사)'의 임원급여에 대한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조치는 폐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기반이며 지역경제의 기둥이고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제로 중소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활성화와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지원세제 등의 확충



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고 국민 각자가 공익실현에 직접 기여하는 사회를 창조하기 위해 세제로 대담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인정특정비영리활동법인제도에 대해서는 요건 완화, 인정절차 등의 간소화, 기부로 간주하는 손금산입한도액 인상, 기부의 세액공제제도 창설 등 지원세제를 확충하겠습니다.

소득세의 기부우대세제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제도를 창설하여 현재의 소득공제제도와 선택제로 하겠습니다.

상속세·증여세 개혁추진



상속세에 대해서는 '부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는' 사고방식에서 '유산과세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겠습니다.

상속세의 과세 기준, 세율의 조정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사회의 안정과 활력에 필수적인 중견자산가층의 육성에 배려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세수를

사회보장의 재원으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상속세 과세방식의 검토에 따라 현역세대로의 생전증여에 의한 재산의 유효활용 등의 관점을 포함하여 증여세에 대해서도 재검토 하겠습니다.

국제연대세 검토



국경을 넘나드는 특정한 경제활동에 대해서 과세하여 그 수입을 빈곤박멸, 도상국 지원 등을 실시하는 국제기구의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제연대세’에 대해 검토를 하겠습니다.

개별간접세 개혁추진



단일한 경제행위에 소비세와 함께 과세하는 것이 되는 개별간접세는 신속하게 정리하여 간접세는 소비세로 단일화해야 합니다.

한편, 세금을 통해 사회에 이익을 주는 특정 품목의 보급과 사용을 촉진하거나,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특정 품목의 보급과 사용을 억제 또는 그 사회적 비용의 일부부담을 요구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잔존하는 기호식품과 에너지에 관련된 개별간접세는 ‘Good 감세, Bad 과세’의 사고방식에 근거한 과세체계로 바꾸겠습니다.

주세 · 담배세



주세, 담배세는 국민의 건강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세금으로 바꾸어야 하며, 그 때는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세는 특히 청주, 소주 등 현행 세부담을 배려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알코올 도수에 비례하는 세제로 바꾸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담배세에 대해서는 재원확보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건강증진목적의 법률을 새롭게 창설하겠습니다. ‘담배규제조약’의 체결국으로서 평소에 국제약속으로 요구되고 있는 흡연율을 낮추기 위한 가격정책의 일환으로 세금을 자리매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1개비에 얼마’라는 과세방법이 아니라 보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한 기준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세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때 일본담배산업주식회사(JT)에 대한 다양한 사업규제와 정부보유주식의 처리, 담배농가에 대한 대응을 동시에 하겠습니다.

자동차관련 제세의 정리, 도로특정재원의 일반재원화, 지구온난화 대책



우리나라의 자동차관련 제세는 너무 복잡하고 일부는 이중과세되고 있는 등 자동차 사용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강요하고 있어 과감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리에 있어서는 간접세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에 따라 이중과세 등을 배제하겠습니다. 동시에 자동차의 자산성과 온난화 가스배출, 교통사고, 소음 등의 사회적 비용에 착안하여 부담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자동차관련 제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자동차 취득세는 소비세와 이중과세방지의 관점에서 폐지하겠습니다. 자동차 중량세 및 자동차세는 보유세(지방세)로 일원화하고 세수를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에 폭넓게 대응하는 지방의 일반재원으로 하겠습니다. 가솔린 등의 연료과세는 일반재원의 ‘지구온난화 대책세(가칭)’로 단일화하겠습니다.

또한, 상기의 개혁을 실현하는 첫 단계로 잠정세율은 지방분을 포함해 모두 폐지하겠습니다. 국가직할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잠정세율 폐지 이후에도 지방의 도로정비 사업은 종래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조엔 가까운 신규채납이 발생하는 현상을 고려하여 징세의 적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개인, 법인 합계 1,000억엔 가까이 가산세가 발생하는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벌칙의 강화와 증가산세 비율을 인상하겠습니다.

소비세의 환급액이 연간 3조엔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상당액의 잘못된 환급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환에 관련된 조사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 활동의 국제화에 따라 '이전가격세제(移轉價格稅制)'가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속하게 관계각국과 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함과 동시에 일부에서 조세조약의 남용 등 부적절한 사안의 적발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본국교육기본법안



민주당 교육정책의 집대성인 ‘일본국교육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누구에게도 ‘배울 권리’를 보장 (2)보통교육의 최종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명기 (3)유아기 및 고등교육에 있어서 무상교육을 점진적으로 도입 (4)지방교육위원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한 ‘교육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교육행정의 책임을 단체장에게 이관 (5)교육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육 재정지출에 대해 국내 총생산(GDP)에 대한 비율을 지표로 함, 등입니다.

또한 건학의 자유와 사립학교진흥,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게 특별한 상황에 맞는 교육, 정보문화사회에 관한 교육, 직업교육 등의 규정을 마련하며, 생명 있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태도나 종교적 감성의 함양 및 종교에 관한 관용의 태도를 기르는 것을 교육상 존중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책임의 명확화



국가의 책임과 시정촌의 역할을 명확히 한 교육제도를 구축하겠습니다.

(1)국가는 의무교육의 재정적인 책임을 질 것과 ‘배울 권리’의 보장에 대한 최종책임을 집니다. (2)현행 교육위원회제도는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책임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합니다. (3)학교는 보호자, 지역주민, 학교관계자,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이사회제도에 따라 주체적이고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중앙교육위원회 설치



교육행정에 있어서의 국가(중앙교육위원회)의 역할은 (1)학습지도요령 등 전국기준을 설정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책임을 가진다. (2)교육에 대한 재정 지출의 기준을 정하고, 국가예산확보에 책임을 진다. (3)교직원의 확보나 법정비 등 교육행정의 틀을 결정하는 등에 한정하고, 그 외의 권한은 최종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자와 지역주민 등에 의한 '학교이사회' 설치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하는 학교에서는 보호자, 지역주민, 학교관계자,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이사회'가 주요 권한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학교 현장에 가까운 지역주민과 보호자 등이 협력하여 학교운영을 해나감으로써 학교와의 신뢰관계와 유대를 깊이하고,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문제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가겠습니다. 이러한 학교와의 유기적인 연계, 협력이 나타나는 것은, 지역 커뮤니티의 재생,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교육예산의 확충



선진국 가운데 현저하게 낮은 우리나라의 교육에 대한 공재정 지출(GDP 대비 3.4%)을 선진국 평균수준 이상을 목표(동 5.0% 이상)로 하여 올리겠습니다. 학교교육과 관련된 공재정 지출은 GDP에 대한 비율을 지표로, 충실한 예산확보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규정을 담은 '학교교육환경정비법안'이 참의원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학교교육환경의 정비



모든 사람에게 적합한 최선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각각의 발달 단계 및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하고 가장 좋은 환경에서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1)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 (2)보다 섬세한 교육지도 제공 (3)안전하고 쾌적한 학교교육실현 (4)안전하고 용이한 통학을 위한 제 조건 정비 (5)심신의 건강, 진학, 직업선택 등에 관한 상담체제 정비 (6)정보화, 국제화 등 사회변화에 대응한 교육충실 (7)학습기회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8)장애가 있는 학생 등에 대해서는 함께 배우는 기회의 확보에 배려하면서 그 특별한 상황에 맞는 교육을 충실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교육환경정비법안’은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는데 계속하여 이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교원의 질(양성과정 6년제)과 교원수의 충실



교원이 직무를 완수하기 위해 교원면허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교원수를 확충하고 교원 양성과정은 6년제(석사)로 하여 양성과 연수의 충실을 도모하겠습니다. 교원이 아이와 마주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의 선진국 평균수준으로 교원을 배치(교원 1인당 학생 16.2명)하는 것을 목표로 소규모 학급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 무상화



고등학교는 희망자 모두 입학하게하고, 공립 고등학교의 수업료는 무료화, 사립 고등학교 등의 학생에게도 수업료를 보조(연 12만-24만엔 정도)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화한 ‘고교무상화법안’은 참의원에서 가결되었는데 계

속해서 동 법안의 성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의무교육 취학전 5세 아동의 취학전 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하고, 점진적으로 무상화의 대상을 확대하여 보호자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등교육기회의 보장



모든 사람이 태어난 환경에 관계없이 의욕과 능력에 따라 대학 등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본과 마다가스카르만이 보류하고 있는 국제인권A규약(체약국 160개국)의 13조의 ‘고등교육 무상화조항’의 유보를 철회하고, 점진적으로 고등교육의 무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장학금 제도개혁



학생에 대한 장학금제도를 대폭 수정하여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학비뿐만 아니라 최저한의 생활비도 대여하겠습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일단 사회인이 된 사람도 의욕이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800만엔 이하 세대의 학생에 대하여 국공사립대학 각각의 수업료에 맞는 무이자 장학금의 교부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또한 소득 400만엔 이하 세대의 학생에 대해서는 생활비 상당액도 장학금의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외국의 예를 참고로 급여형 장학금에 대해서도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진흥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립학교교육을 충실히 하기 위한 사학조성을 유지하고 사립 고등학생에게 수업료를 보조(연 12만-24만엔 정도)하겠습니다.

학습지도요령의 대강환



학습지도요령의 대강(大綱)화를 촉진하겠습니다. 설치자 및 학교의 재량을 존중하고 지역, 학교, 학급의 개별 상황에 따라 학습내용, 학교운영을 현장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의 충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등에서 교과서의 디지털화를 진행하고 내용의 충실을 도모하겠습니다. 교과서 채택에 있어서는 보호자나 교원의 의견이 확실히 반영되도록 현재의 광역채택에서 시정촌 단위로, 더 나아가서는 학교(학교이사회)단위로 채택범위를 단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확대교과서의 충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약시아동을 위한 교과서가 부족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민주당의 제안을 계기로 '교과서 배리어프리법'이 성립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1)장애가 있는 학생이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국가와 교과서 발행자의 책무를 명기, (2)장애가 있는 학생이 사용하는 확대교과서 등의 법정화, (3)확대교과서의 무료배포, 등입니다. 계속해서 모든 어린이들의 배움의 기회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교과서의 배리어프리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안전대책기본법 제정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학교생활을 보내는 것이 가능하도록 학교안전대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안전대책기본법’의 성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안전기준 책정이나 체제 정비의 책무, 역할을 적극적으로 담당하고, 방법(학교안전전문원의 배치 등), 방재, 노후화, 사고방지, 환경위생(석면대책 포함)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내진화 촉진



학생의 학습, 생활의 장소이며 지진시의 방재거점이기도한 공립학교시설의 약 3할이 내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노후화에 의한 사고 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진단의 의무화와 보강, 개축비용의 보조를 늘리는 등 위험한 학교건물의 개수축진을 위한 ‘학교시설 내진화 촉진법안’을 제출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당의 노력을 계기로 ‘지진방재대책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시설의 내진화에 노력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스쿨 카운슬러 및 가이던스 카운슬러 제도의 충실



따돌림이나 등교거부 등의 문제, 진학, 직업선택 등 진로에 관하여 학생들이 상담할 수 있는 구조를 충실히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도와 조언을 하는 전문상담원을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에 배치하기 위해 학교교육법을 개정하겠습니다.

대학개혁과 국가인 지원



‘학생, 연구자 본위의 대학’, ‘창의적인 부단한 개혁을 현장으로부터 발신하는 대학’, ‘사회에 열려있고 사회와 연계, 협동하는 대학’을 목표로, ‘상아탑’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 만들기, 지혜 만들기의 거점’으로서의 대학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세계적으로도 낮은 고등교육예산의 수준을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결합니다. 또한 산업진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문, 교육적인 가치에도 충분하게 배려를 할 것입니다.

자공정권이 계속하여 삭감한 국공립대학 법인에 대한 운영비교부금의 삭감방침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또한 대폭 삭감되어 온 국립대학병원 운영비교부금은 지역고도의료의 마지막 보루이며, 의료인재양성의 거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국립대학 법인화 직후 수준까지 끌어올림과 동시에 앞으로도 충분한 금액을 확보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대학입시방식에 대해서는 대학 센터시험, 대학입시 그 자체의 전면적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전수·각종학교의 충실



오늘날 전수학교나 각종학교는 사회의 실학적 역할을 하고, 넓게는 산업, 사회의 인재양성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재정지원을 충실하게 하는 등 교육제도의 포지셔닝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정비 등



어린이의 독서 활동은 어린이가 말을 배우고 감성을 닦고, 표현력을 높이고, 창조력을 풍부하게 하는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어린이의 독서활동추진법

이나 2010년을 ‘국민독서의 해’로 정한 중참본회의서 ‘국민독서의 해에 관한 결의’를 발판으로 하면서 전국의 학교도서관의 정비, 충실을 추진하는 등 어린이의 독서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활자문화의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사서교사가 부족한 현상을 고려하여 그것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생교육의 충실



기술의 고도화, 전직, 재취업 준비, 지역활동의 리더양성, 교양강좌 등 다양한 교육요구에 대응하는 평생학습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이용하기 쉬운 시설의 정비, 공민관 활동의 활성화, 공공도서관의 더한 층의 충실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대학, 단기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일하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는 등 배우는 기회의 충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인쿠루시브(함께 살고 함께 배우는) 교육의 추진



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특별한 상황에 맞는 교육, 각각의 아동에게 적절하고 최선인 지원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교육에서 장애인과 건강한 사람이 함께 배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원, 유치원 단계부터 초중학교 교육까지 인쿠루시브 보육, 교육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시설의 배리어 프리화 약시자용의 확대교과서 등의 보급, 발달장애아에 대한 지원 등 장애인의 관점에서 교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국내인 일본어교육의 충실



모든 아동 및 학생들에게 문화적 소양을 양성하고, 타인과의 대화, 교류 및 협동을 촉진하는 기초가 되는 언어 국어력의 습득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내에서의 일본어교육을 충실히 하는 동시에 해외의 일본어 학습자에 대한 일본어 전문가의 파견 및 외국인 일본어 교사의 방일 연수 등 해외에서의 일본어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예술문화·커뮤니케이션교육의 충실



예술문화에 의한 사회의 활력과 창조적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고, 연극, 음악, 무용, 연예, 전통예능 등 실연예술의 창조, 공연, 보급, 인재육성을 추진하겠습니다.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의 활용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필요와 노력에 부응하면서, 예술가, 전문가를 지원해 가는 지역주민주도형의 예술문화정책을 지향합니다.

또한 국제화 속에서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협력, 협동할 수 있는 창조성이 풍부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교육거점의 정비와 커뮤니케이션 교육의 충실을 도모하겠습니다.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 진흥



일본의 지역풍토와 역사로부터 태어나 자란 전통문화는 관광자원으로서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등 앞으로의 발전과 활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문화재 보호, 지역의 전통예능, 공예의 계승, 교육에서의 체험감상 등 전통문화를 보호, 육성, 진흥하기 위한 환경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스포츠기본법 제정



스포츠를 '한다', '본다', '지원한다'로 파악,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까운 곳에 스포츠가 자리매김하는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역이나 현장에서의 자주적, 주체적인 노력을 존중하는 스포츠 정책의 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스포츠기본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지역밀착형 거점만들기 추진



남녀노소, 장애 여부에 관계없이 누구나가 스포츠를 대하도록 평생스포츠의 거점으로서 지역에 뿌리내린 클럽 스포츠의 확립이나 학교시설 등의 복합 이용의 추진이 불가결합니다. 주민에 의한 자주적, 자발적인 운영, 기업과의 연계, 행정의 지원을 일원화하여 생활에 밀착한 지역에 있어서의 스포츠 활동의 핵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워킹, 그라운드 골프, 게이트볼, 체조 등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활동이나 스포츠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 밀착형 클럽스포츠를 진흥하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잔디입이기



초등학교의 교정이나 공공 스포츠시설의 잔디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아이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운동장의 잔디화는 신체에 대한 충격을 완화하고, 스포츠 기술향상과 체력 만들기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경감, CO₂ 삭감효과와 열섬현상의 억제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잔디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고용창출의 관점에서 NPO 등과의 연계를 중시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스포츠와 친해질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종목에 각각의 연령대에 따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겠습니다. 톱아슬리트(top athlete)가 은퇴 후에도 그 경험을 충분히 활용할 환경을 정비하고, 지도자의 육성과 외부코치과건제도의 확립, 스포츠 소년단에 대한 지원, 사회체육지도자 등의 신분보장과 양성, 확보 평생스포츠 진흥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부담 없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스포츠 단체에 의한 강습회와 지역리더의 육성, 세대간 교류사업, 청소년 스포츠 활동과의 연계 등을 추진하고, 공공체육시설의 배리어 프리화를 모색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스포츠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스포츠 진흥 시책과 장애인시책의 효과적인 연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령과 장애의 정도를 넘어 누구에게도 스포츠의 혜택을 입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스포츠 의학의 진흥을 강력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스포츠 의학은 일부의 전문적인 선수만을 위한 학문이 아닙니다. 경기력 향상과 장애예방의 관점에서 스포츠 현장에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생활습관병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오늘날에는 운동에 관한 연구성과를 많은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활용하여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 도핑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그 활동이 늦어지고 있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같은 규칙 아래 행해지는 전 세계 공통의 문화입니다. 문화, 풍습 등이 다른 외국과 스포츠에 관한 기술과 정보, 지식의 교류를 도모하는 것은 전 세계 사람들이 평화롭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고유의 무도를 포함하여 스포츠를 통한 국제사회의 상호이해와 교류를 위한 시책을 한층 더욱더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 169회 정기국회에서 초당파로 성립시킨 연구개발력강화법의 취지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과학기술을 더욱 발전시키고 그 성과를 기술혁신으로 연결시켜 가겠습니다.

산학관(産學官)이 협력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을 사회, 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재검토하고 사회 인프라 정비 등을 추진하는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를 현재의 종합과학기술회의를 개조하여 내각총리대신 하에 설치하겠습니다. 이 전략본부에서는 과학기술정책의 기본전략 및 예산방침을 책정하고, 성정황단적인 연구프로젝트나 기초연구 실용화의 일체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프로젝트의 평가를 국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소립자물리학이나 재생의료 등의 거액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연구 분야에서 앞으로도 앞서 나가는 주자의 지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도, 세계적인 연구거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구미나 아시아 국가와의 연계강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가겠습니다.

과학기술인재의 육성 강화



슈퍼사이언스 하이스쿨(과학기술, 수리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학교)을 확충하는 한편, 과학의 즐거움을 아이들에게 실감시키기 위해 산업계의 협력을 얻어, 사이언스 캠프(연구소 등에서의 실험, 경험 등) 및 연구자의 초중학교 파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구자 장려금제도를 창설하고, 국내의 우수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연구자 비자의 확충 등 우수한 외국인연구자가 우리나라에 모이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 강화



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예산 120억엔을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높게 평가되는 독일의 정부지출비율에 해당하는 600억엔으로 5배 증가시키고, 대학,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의 공동연구를 제도, 예산상에서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기반기구의 기술정보제공, 유통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세계 최첨단의 환경에너지 기술 확립



2020년까지 에너지의 10% 정도를 재생가능에너지로 하는 것을 목표로 세계를 리드하는 연료전지기술, 태양광 발전기술, 초전도 기술, 바이오 매스 기술 등 환경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책임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유지, 발전



자공(自公)정권이 ‘호내부토(骨太)방침 2006’에서 내놓은 사회보장비삭감 방침(연 2,200억엔, 5년간 1조 1,000억엔)은 철폐하겠습니다. 국민 개인연금, 국민 개보험을 지키고, 구직자에 대한 새로운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의료는 제공하는 측과 제공받는 측의 협동작업입니다. 각계, 각층의 대표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여 의료의 전면개혁에 관한 목표와 공정을 정한 기본방침을 책정, 건의하는 회의체의 구조와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그 실현을 도모하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의료의 안심, 납득, 안전

환자, 가족의 입장에 서서 의사, 의료기관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의료대화 중개자’를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 배치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는 환자, 가족에 대한 진료경과의 설명, 사인규명에 대한 노력, 의료사고 발생 시의 조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습니다. 각 도도부현에 설치되는 의료안전지원센터가 원외조사팀에 의한 조사나 재판외분쟁처리사업자(제3자 ADR)를 소개합니다. 사고정보에 대해서는 지정분석기관에 대한 신고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의 제언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을 골자로 하는 ‘의료에 있어서 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안전, 납득을 얻기 위한 법률’을 성립시키겠습니다.

무과실 보상제도의 창설



의료분쟁의 조기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공적보험 의료기관, 약국, 개호시설에서 발생한 의료 등 사고사례 전반을 대상으로 공적인 무과실 보상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보상비는 보험료, 건강보험료, 공적지출로 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기금을 창설하겠습니다.

후기고령자¹⁸⁾ 의료제도의 폐지와 의료보험의 일원화



후기고령자 의료제도는 폐지하고, 폐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부담 증가는 국가가 지원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피용자보험(被用者保險)¹⁹⁾ 등의 부담의 불공평을 시정하겠습니다.

피용자 보험과 국민건강보험을 단계적으로 통합하여 궁극적으로는 지역 의료보험으로 하여 의료보험제도의 일원적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개보험제도를 지켜내겠습니다.

새로운 의료기술, 인약품의 보험적용 신속화



의약품 등의 제조, 수입허가 및 보험적용의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며, 심사나 결과를 공개하고 그 효과와 안전성이 확립된 것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험을 적용시키겠습니다.

18) 75세 이상의 고령자를 말한다.

19) 직역보험의 하나로 정부관장건강보험, 선원보험, 국가공무원공제조합, 사립학교교직원공제조합 등이 포함된다. 사업자로부터 보험료의 일부를 징수하기 때문에 급여가 국민건강보험보다 높다.

의사 양성수 1.5배 증가



의사양성의 질을 높이고 인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당분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의 평균적인 인구 당 의사 수(인구 1,000명당 의사 3명)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의학부 정원을 1.5배로 늘리겠습니다. 기존 의학부의 증원, 간호학과 등이 있으며 병원이 있는 대학의 의학부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의사양성, 협력기관 등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실시함과 동시에 장학금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현역의사의 유효한 활용으로 의료종사자 부족 경감



구급, 산부인과, 소아과, 외과, 벽지, 재해 등의 의료제공체제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의료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의료기관의 연계, 단기간 정규근무제 도입, 국공립 병원 등의 정수 증가, 공적점업을 해금하는 것 등에 의해 현역 의사의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 ‘의료종사자 등 확보지원센터(가칭)’를 설치하고 의료종사자 확보, 알선, 휴직자의 복직지원 등을 수행합니다.

또한 후생연금병원과 사회보험병원은 공적으로 존속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새롭게 ‘지역의료추진기구(가칭)’를 설치하여 양병원의 관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연수의 충실



일관성 있는 학부교육, 전기, 후기 임상연수를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후기졸업 후 임상연수에 대해서는 종합임상의 연수, 벽지의료연수, 산부인과, 구급, 소아과, 외과의료 연수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편중을 해소하겠습니다.

근무인의 취업환경개선



의사양성, 활용책에 의하여 실동(實働)의사수를 증가시킴과 동시에, 근무의사의 무보수잔업을 시정하고 당직을 야간근무로 간주하는 등 의료현장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육아와 개호를 하면서 근무하는 의료종사자가 계속해서 일하고 또 복직하기 쉽도록 원내보육시설의 정비와 오픈화, 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입소, 병중인 아동보육의 충실, 육아지원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의료종사자의 직능확대와 정원증가



약사, 이학료법사(理学療法士), 임상검사기사 등 코메디컬스텝(co-medical staff)²⁰⁾의 직능확대와 증원을 도모하고, 의료제공체제를 충실히 하여, 의료사고방지,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임상교육 등을 받은 간호사 등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의료행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합니다. 병원 근무의가 진료뿐만 아니라 진단서나 의견서, 소개장의 작성 등 사무적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에 의해 의사부족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의 사무를 분담하는 의료사무원의 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구급이송, 구급의료의 연계강화



구급업무를 시정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도도부현에 이관하고, 구급본부에 구급의료의 전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를 24시간 체제로 배치합니다. 구급본부는 통보내용으로부터 환자의 긴급도, 중증도를 판단하여 경증의 경우 의료기관의 소개 등을 하고, 중증인 경우는 구급차와 소방방재 헬기, 닥터

20) 의사, 치과 의사 이외의 의료종사자의 총칭.

카, 닥터 헬기 등 최적의 운송수단으로 의료기관에 이송합니다. 닥터카를 모든 구명구급센터에 배치하고 소방방재 헬기를 닥터 헬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급화하여 구급본부마다 닥터 헬기를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구급구명사의 직능확대를 꾸준히 도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구급이송 시, 의식장애의 감별은 혈당치의 측정이 필요한데, 구급구명사도 간단한 혈당치의 측정을 할 수 있도록 체제정비에 착수하겠습니다.

지역인료를 책임지는 의료기관 유지



누차 진료보수 마이너스 개정이 지역의료의 붕괴에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총 의료비 대비 GDP 비율을 앞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까지 인상해 가겠습니다. 먼저 의사확보 등을 추진하고, 간호사, 의료 사무원, 의료 사회복지사, 의료 중개자, 보조원 등의 증원에 노력하며, 지역의료를 지키는 의료기관의 입원에 대해서는 그 진료 보수를 증액하겠습니다. 그때는 환자의 자기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개 질병, 5개 사업을 핵심으로 취급하는 공적병원(국공립 병원, 일본 적십자 병원, 후생연금 병원, 사회보험 병원 등)은 정책적으로 삭감하지 않겠습니다. 중의협(中醫師協, 중앙사회보험 의료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겠습니다.

레셉트(Rezept) 온라인청구 원칙화



레셉트의 온라인 청구를 ‘완전 의무화’에서 ‘원칙화’로 바꾸어 소규모 의료기관의 철수와 지역의료의 붕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구의 도입에 있어서는 진료보수상의 인센티브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외래관리가산(外來管理加算)의 5분 요건을 철폐하겠습니다. 의료비의 내용과 단가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이 발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암 대책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대장암, 폐암, 위암 등에 유효성이 높은 암 검진 수진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진하기 쉬운 체제를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암 예방에 효과적인 백신의 개발, 집중의 추진, 금연대책을 철저히 하는 등 최신 암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체제 등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암 환자와 가족도 참가하는 ‘암 대책 추진협의회’의 운영에서 ‘암 대책 추진기본계획’이 착실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암 등록의 법제화를 검토하겠습니다.

지역 암 진료 거점병원은 국립암센터와 협력하여 화학요법전문의, 방사선 치료전문의 등을 양성하겠습니다.

안심하고 낳고 기를 수 있는 의료



주산기(周産期) 모자의료센터가 가지는 기능을 명확화, 재분류, 정비확충하고, 산부인과 병원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도도부현의 책임으로 주산기 정보시스템 및 반송하는 곳의 조회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재검토하고 공동체제를 촉진하겠습니다.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현재의 출산일시금(2009년 10월부터 42만엔)을 재검토하여, 국가로부터의 조성금을 더하여, 출산 시에 55만엔을 지급하겠습니다. 지역 소아과센터의 시간외 외래담당 개업의와 공동화, 소아구급의료의 시스템화, 소아의료 진료보수 인상, 소아의료의 자기부담을 경감하겠습니다. 신생아 특정집중치료실(NICU)을 현행 2,000병상에서 2,500병상으로 늘리고, 후방지원병상을 확충하겠습니다.

치과의료 개혁



‘이의 건강유지 추진에 관한 법률’을 성립시키겠습니다. 신체장애자수첩의 교부신청의 첨부서류로서, 씹는 기능장애에 대해서는 신청절차에 치과 의사의 진단서를 인정하도록 신체장애자복지법을 개정하겠습니다. 현재 치과검진은 년대와 소속마다 다른 법률이 실시되고 있지만, 고령와상환자 및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치과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과질환 예방법과 치료에 대해서도 조사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형 인플루엔자 대책



한중일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전체가 신형 인플루엔자에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발열 상담센터를 강화하고 감염 대응용 격리개인실 확보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신형 인플루엔자 행동계획 지침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검역법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습니다. 항바이러스 약의 충분한 비축, 백신개발 제조, 비축, 유통체계의 확충 및 해외와의 연계를 도모하여, 강독성 신형 인플루엔자의 백신을 얻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고, 수혈을 통한 감염방지를 위한 신기술을 도입하겠습니다. 종래의 병원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병원이나 의료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양계장에 대한 경영지원책도 강화하겠습니다.

간염 종합대책



간염의료비조성법을 제정하고, B형 C형 간염환자가 받는 인터페론 및 그 외의 항바이러스 약물치료의 자기부담 한도액을 월 1만엔으로 하겠습니다. 치료를 위해 휴업, 휴직하는 환자의 생활안정과 인터페론 이외의 치료에 대한 지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교육, 홍보를 확충하고 감염환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겠습니다.

난치성 질환대책



난치병 환자, 가족의 절실한 소리가 시책에 반영되도록 난치병대책위원회의 정례적 개최 등 환경정비를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지정이나 대상 연령확대를 원하는 각종 질환의 환자가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의 난치병대책 및 희귀질환의 신약개발이나 보험적용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난치병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료비 자기부담의 경감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제도를 정비하겠습니다.

고액요양비제도에 관해, 백혈병 등 장기 계속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의 자기부담 경감을 포함하여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폭자 원호



고령화 하고 있는 피폭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새로운 원폭증의 인정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어도 피폭자이다.”라는 인식 하에, 앞으로도 재외 피폭자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피폭자 2세가 고령화함에 따라 피폭에 의한 건강에 대한 영향이 우려되고 있어, 그 실태파악에 노력함과 동시에 실태에 따른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피폭자에 대한 보건, 의료 및 복지에 걸친 종합적인 시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양질의 개호(介護)를 가능하게 하는 인력의 충실



양질의 개호서비스 확보를 위해 사업자에 대한 개호보수를 7% 가산하고, 개호노동자의 임금을 월 4만엔 정도 인상하겠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 및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개호현장에서는 2009년 4월부터 개호보수가 3% 인상되었지만, 개호노동자의 임금 인상에는 이르

지 않고, 노동자의 임금이 억제된 상태로 되어 있어 노동조건이 악화와 심각한 일손부족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홈 헬퍼, 개호복지사 등 개호스텝의 증원, 전문성을 높이는 시책을 강구, 개호지원전문원(케어 매니저)의 개호보수를 인상하고, 권한과 재량을 늘려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최소한의 업무량이 되도록 책상업무의 경감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요개호 인정이 쉽게 나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새로운 요개호 인정기준에 대해서도, 개호서비스의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령자의 생활실태, 요개호자의 요구를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인정을 재검토하여, 개호가 필요한 사람이 안심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호서비스 기반확충



요양병상을 삭감하는 개호요양병상재편계획을 중지하고, 개호 받지 못하고 쫓겨나가거나 장기간 입소대기를 기다리지 않도록 향후 필요한 병상수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의 각종 병상간, 시설간의 연계를 촉진하고, 적절한 의료 및 개호제공체제를 재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약 40만명의 시설입소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시설정비계획의 약 3배의 속도로 양질의 그룹 홈을 비롯해 특별양호노인홈 및 노인보건시설, 지역의 실정에 맞는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증설하겠습니다. 개호보험제도는 국민의 공동연대의 이념에 의해 성립하는 것이며, 가족개호에만 부담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호기반정비를 확충하겠습니다.



개호노동자의 처우개선, 사회적 지위향상, 가족 개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적인 지원 방식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곧바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이즈미 정권 아래에서 사회보장비의 삭감을 목적으로 개호보수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개호노동자의 임금이 억제되고 이직자가 증가, 노노개호(老々介護), 가족개호의 증대 등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호보험법이 시행되어 10년이 지난 지금, 이와 같은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고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제도가 되도록 진정한 개호의 사회화를 목표로 하는 개호보험제도의 전면개혁에 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집중적으로 개혁하여 유엔장애인 권리조약의 비준에 필요한 국내법의 정비를 위해, 내각에 ‘장애자제도개혁추진본부’ 설치하겠습니다. 추진본부에는 장애당사자, 지식인을 포함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책입안단계부터 장애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자시책에 관한 모니터링 기관의 설치, 장애자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의 구축, 장애인 학대를 방지하는 법제도의 확립, 정치, 선거에 대한 참가를 더욱 확보하고, 사법에 관련된 절차에 있어서의 지원 확충, 함께 살고 함께 배우는 교육으로의 전환, 소득 보장, 이동의 자유 권리 보장, 장애인에 대한 의료지원의 재검토, 난치병 대책의 법제화 등 장애인이 권리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자기결정, 자기선택의 원칙이 보장되도록 제도개혁을 입안하겠습니다.

장애인이 당연하게 지역에서 생활하며 지역의 일원으로서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합니다. 장애자자립지원법에 의해 이용료의 부담증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어려워짐으로써 복지시책에 대해서는, 발달장애, 고차뇌 기능장애, 난치병, 내부장애 등도 대상으로 하여 제도의 허점을 제거하고, 장애복지서비스의 이용자 부담을 능력껏 부담하는 서비스지급결정제도의 재

검토 등을 실시, 장애인자립지원법에 대신하는 ‘장애인종합복지법(가칭)’을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예산을 확충하고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겠습니다. 정신장애인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입원환자의 사회복지귀와 지역생활의 실현을 위해 관련법제도의 정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의 충실



생활보호제도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회복지제도의 마지막 안전망이며 국가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의 생활’의 수준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생활보호급여의 생활부조에 대해서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안이하게 인하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편부모 세대에 대해서 급여를 하고 있는 모자가산이 2009년 4월에 폐지되었습니다만, 편부모 가정의 자녀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모자가산을 부활시키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를 재검토함에 있어서, 자립지원 및 취업지원의 확충, 무연금자의 발생을 방지하기위한 공적연금제도개혁 등에 발맞추어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중국산류 일본인 지원



노령연금의 만액지급과 생활지원급여의 실시를 정한 개정중국산류일본인 등 자립지원법이 민주당을 포함한 초당파의 노력에 의해 2007년 성립되었습니다. 만주에서 종전을 맞아 부모와 사별, 이별한 일본인 고아 등 중국산류일본인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개정법의 시행에 즈음하여, 생활지원의 수입인정에 대하여 2세, 3세와 동거하는 사람이 불리하지 않도록 하고, 산류 일본인 등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도 생활지원의 대상으로 할 것, 의료지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선택을 인정할 것 등 세심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노숙자 자립지원



민주당의 법안제출이 계기가 되어 성립된 노숙자자립지원특별조치법에 기초한 시책을 착실히 실행함과 동시에, 계속하여 노숙자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생활보호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공영주택 등의 활용에 의한 주거의 확보, NPO 등에 의한 취로기회의 제공확대, 건강의 유지 등에 의해 노숙자가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마약·약물 대책



약물의존,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자립지원,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을 정비하겠습니다. 성정황단적인 마약단속체제를 강화하고 약물공급원의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각성제, 대마초뿐만 아니라 'MDMA'와 같은 알약 형태의 합성마약이나 이른바 탈법 약물의 남용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물남용의 저연령화를 방지하기 위해 약물의존으로부터 회복한 사람의 체험담 등을 통해, 약물의존의 무서움을 실감할 수 있는 중고생에 대한 교육, 계발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연금 통장’에서 ‘없어지지 않는 연금’



소위 ‘사라진 연금’, ‘지워진 연금’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가 프로젝트로 자리매김하여 2년간 집중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기록문제의 피해자에게 한 시라도 빨리 보상하고, 연금기록문제의 재발방지와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겠습니다. (1)연금기록이 잘못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해서는 증거수집 등을 단순화하고 일정의 기준이래 기록을 정정하는 ‘일괄 보상’을 실시한다. (2)납부한 기록이 없는 사람의 기록을 적극적으로 회복하기 위하여, ‘연금기록회복촉진법안(가칭)’의 성립을 도모하고, 사무국 체제강화 및 판단기준의 재검토를 실시한다. (3)기록정정 후의 연금액이 지불되기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사무처리 체제를 재검토 한다. (4)컴퓨터 상의 연금기록과 서류상의 연금기록의 모든 페이지의 조회를 신속하게 시작하고, 컴퓨터상의 기록의 정정, 통합을 한다. (5)후생연금기록의 변경 등 기록문제의 실태규명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자의 확정과 보상을 실시한다. (6)모든 가입자에게 ‘연금 통장’을 교부하여 언제든지 자신의 연금 기록(표준 보수월액 포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공평한 새로운 연금제도를 창설



위기적 상황에 있는 현행의 연금제도를 공평하고 알기 쉬운 제도로 개정하고,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을 골격으로 하는 연금제도 창설을 위한 법률을 2013년까지 성립시키겠습니다. (1)모든 사람이 동일한 연금제도에 가입하고 직업을 이동해도 별다른 절차가 필요 없도록 연금제도를 예외 없이 일원화한다. (2)모든 사람이 ‘소득이 동일한 경우라면 동일

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수급액을 계산하는 '소득비례 연금'을 창설한다. 이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제도로,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한다. (3)소비세를 재원으로 하는 '최저보장연금'을 창설하고, 모든 사람이 7만엔 이상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누구나가 최저한의 연금을 받을 수 있고, 안심하고 고령화시대를 맞을 수 있는 제도로 한다. '소득비례연금'을 일정액 이상 수급할 수 있는 사람은 '최저보장연금'을 감액한다. (4)소비세 5% 세수 상당분을 전액 '최저보장연금'의 재원으로 투입하여 연금재정을 안정시키겠습니다.

연금수급자의 세부담 경감



연금수급자의 세금, 보험료의 합계 부담수준을 경감하고, 고령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재검토 하겠습니다. (1)2004년도 세제개정으로 축소된 공적 연금 등 공제를 2004년도 개정 이전으로 되돌린다. (2)2004년도 개정으로 폐지된 노령자 공제를 부활한다. (3)단, 양 공제의 적용은 소득제한을 둔다.

연금보험료는 연금급여 이외에 사용하지 않음



연금보험료를 연금급여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연금재정을 안정시키는 것과 동시에, 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연금보험료가 연금급여 이외에 사용된 총액은 약 7조엔에 달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매년 약 2,000억엔의 보험료가 연금사무비나 홍보비, 시스템 경비로 연금급여 이외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청 사무비에 대한 연금보험료 유용을 금지하고, 최소한의 사무비는 국고에서 부담하겠습니다.

사회보험청 폐지와 세입청 창설



사회보험청을 폐지하고, 국세청과 기능을 통합하여 '세입청'을 창설하겠습니다. 사회보험청의 직원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하여 이관하는 자를 결정하겠습니다.

사회보험청을 '일본연금기구'(특수 법인)로 이행시킴으로써 연금기록문제가 적당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청의 체질을 그대로 이어받은 조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세입청'을 창설함으로써, (1)세금과 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하여 미납, 미가입을 없앤다. (2)소득과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세금과 사회보장제도 공통의 번호제도를 도입한다. (3)국세청 가진 소득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적절한 징수와 기록관리를 실현한다. 등의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낭비체질을 일소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습니다.

무연금 장애자 구제의 확충



무연금이 된 이유가 아니라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 무연금 장애인 모두에게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하겠습니다.

장기안정고용을 기본으로 하는 고용정책



기간의 규정이 없는 무기고용, 직접고용을 고용의 기본원칙으로 하여, 장기안정고용을 고용, 노동정책의 기본으로 모든 노동자가 평생 동안 삶의 보람을 가지고 일하며 풍요롭고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2007년에 제출한 ‘고용기본법안’에서는 (1)젊은이와 여성, 고연령자, 장애인, 생활보호자 등에 대한 취로지원 (2)지역고용개발이나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3)외국인 노동자에 관한 환경정비 (4)공정한 일하는 방식의 확보 (5)안전과 건강의 확보 (6)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 (7)구인의 개척이나 고용정보의 수집, 제공 등을 포함한 고용기회의 확보, 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규정하여 가겠습니다. 이러한 포괄적인 고용정책에 의하여 성실하게 제대로 일한다면, 누구나가 보통의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노동방법의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고용, 노동정책의 추진에 있어서는 국제노동기준을 존중, 준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관계조약을 조기에 비준하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까지 직업능력개발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장애인과 고령자의 고용촉진, 시대에 맞는 공공 직업훈련의 확충 등 적극적인 고용정책을 추진하고 민간의 힘을 활용한 직업능력개발에 힘을 쏟겠습니다.

젊은 층에서 중장년층까지 모든 세대에 대응하는 직업능력개발제도의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보다 높은 수준의 실천적인 직업능력을 가진 인재육성을 위한 직업훈련학교의 개설,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관민직업소개기관 및

능력개발기관, 지방자치 단체와의 연계(구인, 구직정보의 상호제공 등 포함), 지역노사의 참여에 의한 평가제도 등을 확립하겠습니다. 기업내, 업계내의 직무내용 및 능력평가기준 등을 명확히 하고, 사회인의 이용 확대를 위한 장학금제도의 정비, 캐리어 카운슬러²¹⁾의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일정기간 근무하면 휴업이 인정되는 캐리어 브레이크 제도의 보급도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책을 통해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와 구직자의 불일치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젊은이의 고용취로지원



고용실업 정세의 악화에 따라 파견노동자를 포함한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직장을 쫓겨나고, 인터넷 카페(PC방) 등에서 자고 먹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주거와 일의 확보법’을 제정하여, 주거가 없고 안정적인 취직이 어려운 젊은이 등에 대하여 헬로 워크, 지자체, 기업의 연계 하에, 상담 및 직업소개, 직업훈련, 임대주택의 입주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을 희망하는 젊은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1)‘젊은이 등 직업 카운슬러’에 의한 직업안정소의 취로지원 (2)‘개별취업 지원계획’의 작성 등에 의한 직업지도 (3)민간기업에서의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취업지원수당(1일 1,000엔, 월 3만엔 상당)을 지급하겠습니다.

교육기관, 기업, 국가, 지자체가 연계하여 직업체험학습과 기업견학, 인턴십 등을 실시하여 젊은 세대의 취업의욕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21) 그 사람의 능력, 적성, 학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 사람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 상담을 하거나 적절한 원조를 하는 전문직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 직접고용을 고용의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노동자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30대의 젊은이는 사회인이 된 시기가 불경기와 맞물려 비정규직 고용을 강요당해, 고용에 대한 안심감과 생활안정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07년 성립한 노동계약법에서는 민주당의 수정제안에 따라 다른 고용형태라도 취업실태에 따라 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노동 계약의 원칙에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노동자 파견법의 개정 (2)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에 대하여 체결사유와 고용중지²²⁾의 제한 등을 정하고 (3)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우의 차별적 취급의 금지 (4)복수의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노동재해적용과 노동시간관리,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적용 (5)실질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청부자영업자에 대한 노동계약법의 준용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파견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파견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해고예고수당이나 사회보험이 충분히 적용되지 않는 2개월 이하의 고용계약에 대하여 노동자파견 금지. 이에 따라 '일용직 파견', '스폿 파견²³⁾'도 원칙적 금지 (2)파견노동자와 파견된 회사 노동자와의 동등대우원칙 확립 (3)'직접고용 간주제도'를 창설. 위법한 파견이 발생한 경우 등에 파견노동자가 파견된 곳에 직접고용을 통보할 수 있도록 한다. (4)물건의 제조현장에서의 노동자파견에 대하여는 전문업무를 제외하고 원칙적 금

22) 기간이 정해진 노동계약이 반복 갱신된 후에 노동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기간 만료로 종료하는 것.

23) 파견회사가 파견 기업에 노동자를 1일 단위 또는 30일 미만의 고용계약을 맺어 파견하는 것.

지 (5)일반노동자 파견사업은 26개 전문업무 이외의 파견노동자는 상용고용으로 제한 (6)마진비용을 포함한 정보공개의 철저 (7)'독점 파견'²⁴⁾ 금지규정을 확대하고, 법인 및 그 자법인으로 구성된 법인그룹에 대한 파견을 80% 미만으로 제한, 등 입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까지 최저임금을 꾸준히 끌어 올리겠습니다. 2007년 성립된 개정 최저임금법은 민주당의 수정 제안에 의해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한도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가 지역별 최저임금원칙에 더하여 삽입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 최저임금인상이 순조롭게 실시되도록 재정상, 금융상의 우대조치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전국평균 1,000엔까지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노동계약법에 따라 노사분쟁 예방과 해결



고용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계약이 원칙이라는 사고방식에 입각하고, 예외로 인정되는 기간이 정해진 고용계약의 체결사유와 고용중지 제한 등을 정해, 개별 노사분규에 대한 걱정, 간편, 신속한 분쟁해결 시스템의 정비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고용, 취업형태의 다양화, 복잡화, 비정규직 고용의 증가 등에 따라 임금 및 기타 근로조건이 노동자와 기업의 개별노동계약에 위임되는 것이 많아져서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에 따른 분쟁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 성립된 노동계약법에는 민주당의 수정제안으로 노동계약의 원칙에 취업 실태에 따른 균형고려, 일과 생활의 균형에 대한 배려가 포함되어 노동계약의 기간 및 갱신여부 등의 내용을 서면으로 확인하는 중요성이 명확

24) 특정 파견기업에만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노동계약은 합의에 의해 성립, 변경, 종료되는 원칙에 입각하여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의 촉진에 노력하겠습니다.

구직자 지원 등 고용 안전망의 확충



모든 노동자가 고용보험과 사회보험, 생활보호 등의 사회 안전망에 힘입어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는 구조를 재구축하겠습니다.

고용보험과 생활보호 사이를 연결하는 제2의 안전망을 정비하겠습니다. '구직자 지원법'을 제정하고, 실업급여가 종료된 사람이나 자영업을 폐업한 사람에게 직업능력훈련을 받은 일수에 따라 능력개발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또한 실직 후 1년에 한해서 재직 중과 동일한 수준의 보험료 부담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의 제1의 안전망인 고용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재정운동을 확보하고, 고용정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현재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상의 고용 전망이 있는 경우이지만, 31일 이상의 고용기간이 있는 모든 노동자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일반 피보험자로 하고, 고용의 안전망에서 배제되었던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내정취소를 규제하는 법 정비



신규 졸업자에 대한 채용내정의 취소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던 내정취소에 대해서는 사법상의 규제를 법률에 명문화하기 위해 노동계약법을 개정, 채용내정취소 규제조항을 신설하겠습니다. 채용내정의 안이한 취소를 방지하고 내정취소에 관한 분쟁 예방 및 해결 등을 도모하기 위해 내정취소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하여 무효로 하는 것 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육아, 개호휴직제도를 이용하기 쉽게 하는 것에 더하여,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직장복귀 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지원 메뉴를 정비하겠습니다. 육아와 개호를 하면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장시간노동의 해소, 연차유급휴가의 완전 소화 등 일하는 방식을 변혁시키고, 어린이 간호휴가의 보급, 아내의 출산 후 아버지의 산후 휴가, 아버지의 육아휴직 취득의 촉진, 근무시간 단축제도의 보급, 기간제 노동자의 육아, 개호휴직취득 보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재택근무에 대해서, 정보보호 등 설비, 기술에 관한 지원, 노동시간의 관리 및 업적평가에 대한 룰을 만들겠습니다.

모집·채용에서의 연령차별금지



노동자의 모집 및 채용에 대해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모집, 채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안’에 의해서 개정고용대책법에 모집, 채용에 관한 연령제한금지의 의무화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버블붕괴 후 오래 지속되는 ‘취직 빙하기’에 학교를 나와도 취직할 수 없고, 정규직을 희망해도 파트나 아르바이트 업무밖에 할 수 없었던 세대 또는 출산, 육아 및 복학 등을 위해 일단 이직하고 재취업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 일할 의욕이 있는 고령자 등의 고용기회를 증가시키겠습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실현



모든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건강확보, 지역활동, 자기계발 등 개개인의 의식과 요구에 따라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사회, 즉

남녀 모두 일과 생활을 조화시키고 건강하고 충실히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노동에 의한 정신건강의 악화, 과로사, 과로자살 등을 방지하고 건강, 안전배려 의무가 적절히 이행되도록 노동시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의 할증임금률 50%에 대해 인상을 착실하게 실시하겠습니다. 1일 11시간의 휴식시간 규제를 마련한 EU의 노동시간 지침을 참고하여 심신의 건강확보를 위해 근무와 근무 사이의 휴식시간 도입에 노력하겠습니다. 과건, 청부노동자도 포함하여 안전위생교육 및 예방,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하고, 노동재해를 박멸하겠습니다.

농민 호별소득보상제도의 도입



쌀, 보리, 콩 등의 판매가격이 생산비 이하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농업자호별소득보상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식량자급률 목표를 전제로 책정된 '생산수량목표'에 맞게 생산을 한 판매농민(집단영농 포함)에 대하여 생산에 필요한 비용(전국 평균)과 판매가격(전국 평균)과의 차액을 기본으로 하는 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입니다. 교부금의 교부에 있어서는 품질, 유통(직매소 등에서의 판매), 가공(쌀가루 등의 형태로 판매)에 대한 대처, 경영규모의 확대, 생물 다양성 등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정도, 주식용인 쌀을 대신하는 농산물(쌀가루용, 사료용 등의 쌀 포함)의 생산요소를 가미해 산정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식량의 국내생산 확보 및 농민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농업의 다면적 기능을 보장하겠습니다.

축산·낙농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보상제도의 도입



축산, 낙농에 대해서는 수입사료에 의존하고, 규모확대, 효율성을 우선시키는 현재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국산사료를 유효활용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환경부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농민호별소득보상제도의 구조를 기본으로 한 '축산, 낙농 소득보상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비용 상승과 축산물 가격 하락 등의 사태를 기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능하고, 소득보장을 도모할 수 있으며, 축산물 계획적인 생산에 의해 식량자급률의 향상을 도모합니다. 아울러, 적지적소에 자급사료 생산이나 사료용 쌀의 이용, 남은 식품의 사료화 등을 촉진하는 한편, 국산 치즈 등의 고부가가치화 등 유통, 가공 분야에 대처하는 노력을 추진하고 소득향상을 도모하며, 다양한 축산, 낙농경영의 실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야채·과일 등에 대한 새로운 지원조치 확립



야채, 과일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요구에 맞게 상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경영안정 확보 등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새로운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자원관리의 강화 및 '어업소득보상제도'의 창설



일본의 어업은 수산자원의 상황에 비해 어획량이 과잉상태입니다. 양자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개별 어업자별 어획 가능량 지정(개별 TAC)'과 '자원관리계획' 제도를 도입하여, '어업소득 보상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즉, 개별 TAC의 대상이 되는 어업자 또는 자원관리계획에 맞게 생산하는 어업 자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식량안정공급의 책무를 맡고 있는 것을 감안, 생산에 필요한 비용과 어업소득과의 차액을 기본으로 하는 교부금을 교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절한 자원관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휴어(休漁), 감선(減船)에 대해서는 어업소득 보상수준을 기준으로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삼림관리·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의 도입에 의한 삼림흡수원 대책 등 확실한 실행



국토의 보전, 수원(水源)의 함양 등 삼림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교토의정서의 감축목표 달성에 필요한 삼림흡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삼림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삼림소유자에 대하여 삼림의 적절한 관리를 의무화, 간벌 등의 삼림정비를 실시하는데 삼림소유자가 부담하는 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는 '삼림관리, 환경보전 직접지불제도(가칭)'를 도입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사업 중 치산치수사업의 내용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환경, 녹색삼림을 지키는 지속가능한 사업(미도리 댐 구상)으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접지불을 통한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일본의 농촌은 다양한 농업의 담당자가 중층적으로 영농에 종사함으로써 전통문화와 환경을 보호하고, 좋은 커뮤니티를 유지하는 등 다면적인 기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면적 기능은 농업의 담당자 이외의 국민전체가 향유하는 것이므로, 다면적 기능이 유지, 발휘되도록 농촌진흥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농지, 물, 환경보전개선대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한 (1)농촌 마을에 대한 ‘자원보전 관리지불’ (2)환경보전형 농업의 대처에 대해 ‘환경직접지불’ (3)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중산간 지역 등 직접지불’, 의 세 가지 직접지불을 법률에 기초한 조치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업에 대해서는 ‘유기농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추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어촌마을 활성화



어촌마을이 실시하는 바다의 청소, 치어의 방류 등의 대책에 대해 ‘어촌마을 직접 지불(가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자원의 회복과 다면적 기능의 발휘를 위해, 삼림의 보전, 정비 외에, ‘바다의 숲 구상’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해초를 살리고 갯벌을 조성하겠습니다.

국가전략목표로서의 식량자급률 향상



식량안보의 관점에서 국가전략 목표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겠습니다.

식량자급률은 쌀, 보리, 콩 등 농산물뿐 아니라 쇠고기, 유제품 등 주요 농축산물의 생산수량 목표를 설정하고 10년 후에 50%, 20년 후에 60%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건강하게 생활해 나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는 국내에서 모두 생산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식량자급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논농사의 재생과 쌀의 안정적 공급체제의 확립



논에 직접 씨를 뿌리는 생산기술이나 요구에 따른 다양한 품종의 개발 및 보급을 도모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역의 논외 범용화를 추진하고, 벼 농업의 재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쌀을 생산하지 않는 형태의 현행 생산조정을 폐지하고, 주식용 외에 쌀가루용, 사료용 등 다용도 쌀의 계획적인 생산, 유통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식량안보 관점에서 쌀의 비축방식을 ‘선반축적방식’²⁵⁾으로 전환하여, 300만톤(국내산 이외의 것을 포함) 비축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안심에 관한 행정조직의 전면적 개혁



우해면상뇌증(牛海錦狀腦症, BSE) 발생을 계기로 위험분석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위험평가기관(식품안전위원회)도 위험관리기관(농림수산성, 후생노동성)도 식품을 둘러싼 여러 문제, 사고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재개에 즈음하여 위험평가를 사실상 포기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는 등, 그 본연의 자세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위험관리기관은 농림수산성과 후생노동성으로 나뉘어있어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중국산만두 중독문제, 식품표시 위장문제, 사고미곡 부정규 유통문제 등의 사건에 대해 기동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25) 흉작 등에 의해 비축미를 방출하는 기회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경과 후 주식용 이외에 사료용 등으로 판매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현상을 근거로 우리나라 식품안전행정의 본연의 자세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먼저 식품안전위원회는 위험관리기관으로부터 독립성을 담보하여 위험 평가기관이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장에서 식탁까지 위험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림수산성 소비안전국과 후생노동성 식품안전부를 통합하여 위험관리를 일원화한 ‘식품안전청’을 창설하겠습니다.

식품 추적시스템 도입



식품 추적시스템은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거리가 확대되는 경제사회에서 식품사고 발생 시 원인규명과 제품회수, 표시 등의 정보의 정확함을 검증하는데 효과적인 구조입니다.

모든 식품에 기본적인 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한 EU의 예를 참고로, 우리나라에서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모든 식품에 대해서 공급업체, 공급날짜, 판매처, 판매일을 기록하는 추적시스템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사고미곡 부정규유통문제를 계기로 국회에 제출된 ‘미곡 등의 거래 등에 관한 정보의 기록 및 산지정보의 전달에 관한 법률’은 쌀 및 쌀 가공품에만 추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지만,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정부는 모든 식품의 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조문을 추가하는 수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추적을 의무화하는 시기에 입각하여 식품제조공정에서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서 농업생산 공정관리공정(GAP) 및 위기분석중요관리점(HACCP)에 대한 대응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식품표시의 확대 등



식품에 관한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도모하기 위해 가공식품과 외식에 있어 원료원산지 표시의 의무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러나 일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중식, 외식업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대응을 하겠습니다.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 및 복제동물 유래식품에 대해서는 그 취지의 표시 등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추적 가능성 등과 링크된 수입검역체제의 강화 등



일본은 식량의 6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식품 및 동식물의 검역체제 강화, 확충이 필요합니다. 수입식품에 대해 국내식품과 동등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주요수출국에 '국제식품조사관(가칭)'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식품추적 및 위해분석중요관리점(HACCP) 등을 의무화하고, 사전에 '국제식품조사관'의 생산지의 시설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국제식품조사관'의 검사를 받은 시설 이외의 식품수입은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우해면상뇌증(BSE) 대책으로 2008년 중단된 모든 소에 대한 검사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부활하겠습니다.

농지총량의 목표설정



농지는 현재와 미래의 국민을 위한 귀중한 자원으로서는 불가결한 것입니다. 식량자급률 목표를 달성하고, 유사시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을 국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식량자급력의 지표로서 확보해야 할 농지면적의 목표가 되는 농지총량을 설정하겠습니다.



국민이 폭넓게 농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농지 소유자 등에 대하여 경작 등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농지 이외의 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는 것(출구규제)을 전제로 농지제도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진입 규제(입구규제)를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게 농지의 권리를 취득시킨다는 현재의 ‘경작자주의’의 사고방식을 농지소유자 등은 경작 등 농지의 유효이용을 할 의무가 있다는 ‘새로운 경작자주의’로 바꾸겠습니다.

또한 농지에 대해 한 필지마다 하는 규제방식에서 지역별 규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제도로 전환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참여에 의한 농업적인 토지이용(농업진흥지역정비법)과 비농업적인 토지이용(도시계획법)과의 일체화한 종합적인 ‘도시, 농촌지역 토지이용계획제도(가칭)’를 창설하겠습니다.



농지제도의 전면개혁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현행 농지제도의 기본구조를 유지하고, 농지정책의 기본으로서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에 대해 농지의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는 ‘경작자주의’를 견지하겠습니다. 또한, 경작포기지의 해소, 방지를 위해 농지의 권리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경작하거나 또는 경작 목적으로의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농지의 농업상 이용을 확보하는 책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자연인, 법인을 불문하고 의욕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 농업에 새로 진입하는 것을 촉진하겠습니다. 이 경우 ‘인정농업자제도’나 ‘품목횡단적 경영안정대책(논, 밭 경작 경영소득안정대책)’의 대상 농가와 같이 ‘소득목표’ 및 ‘경영규모’를 설정하거나 취업 시 연령제한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입구규제’는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의욕이 저하한 삼림소유자를 대신해 산림조합이나 소재생산자 등 민간사업자를 임업경영의 핵심 담당자로 자리매김하여 그 육성을 도모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에 의한 대응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가 삼림정비 등을 실시하는 안전망 기능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임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높은 기준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임도 정비 대신, 도로망의 계획적인 정비를 촉진하고, 고성능 임업기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목재자급률 50%를 목표로 설정하고 영세하며 다단계인 목재유통체제를 대담하게 재검토하여 효율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그것에 의해 목재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중산간지역을 중심으로 100만명의 고용확대를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나무의 지역에서의 생산과 소비, 생산자를 알 수 있는 목재에 의한 집 만들기를 촉진하고, 공공건물에서의 지역재 우선사용, 이용확대를 추진하고 나무문화의 재생과 지속가능한 순환형사회를 구축하겠습니다.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지구온난화 방지에 크게 기여한다는 관점에서 태양광(열), 풍력, 지열, 수력, 목질 바이오매스 등 지속가능한 자연에너지로 이용 및 활용하기로 하고, 에너지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로 산촌의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법벌채에 의한 외국목재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삼림의 적절한 경영’에 기초한 목재임을 증명하는 ‘추적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26) 생물자원(bio)의 양(mass)을 나타내는 개념이며, 재생 가능한 생물에서 유래하는 유기성 자원으로 화석 자원을 제외한 것.

국유임야사업 개혁



국유임야사업에 대해 농림수산행정과 환경행정의 일체적 추진 입장에서, 국유임야사업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조직, 사업의 모두를 일반회계에서 취급하는 등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였습니다 .

수산물에 대한 추적 가능한 시스템 도입



적정한 자원관리의 실시, 안전과 안심을 담보하기 위해 수산물에 추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국내와 동일한 정도의 자원관리를 하고 있는 것만을 수입하여 위법, 무보고, 무규정(IUU) 어업의 근절을 도모하였습니다.

양식업·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



양식업, 내수면 어업에 대해 국민에 대한 식량안정공급에 도움이 되는 관점에서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양식생산의 유지, 증대 및 수산자원의 유지, 증식을 가능하게하기위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포경 대책



충분한 자원량이 확인된 종류의 고래에 대해서는 적절한 관리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업포경의 재개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조사포경은 국제포경위원회(IWC) 조약 제8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입니다.



농산어촌에서 농림어업을 중심으로 가공, 제조업, 도소매업, 요식업, 정보서비스업, 관광, 숙박업 등 다양한 산업이 영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산어촌에서 (1)농림어업 측이 가공(2차 산업)과 판매(3차 산업)를 주체적으로 하거나 가공, 판매부문의 사업자 등이 농림어업에 참가 (2)농산어촌이라는 지역에서 마을 등에 의한 1차, 2차, 3차 산업의 융합에 새롭게 대응하는, 것에 의해 '농산어촌의 6차 산업화'²⁷⁾를 실현하고 지역의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재원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고, 금융, 세제, 보조금, 규제, 재검토 등을 종합적이고 일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지역의 자립적인 경제권을 확립하고 부가가치의 많은 부분을 지역에 귀속시킵니다.

또한, 농림수산물의 국내생산을 유지, 확대, 및 농산어촌의 재생과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자유화 논의와 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촉진을 양립시키겠습니다.



농산어촌 지역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목질 바이오매스, 볏짚 등의 미이용 자원과 음식 쓰레기 등 폐기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활용하여 에너지, 플라스틱 등을 생산하는 새로운 산업을 진흥하고 분산형고효율 소규모플랜트를 중심으로 하는 바이오매스 콤비나트를 전국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생산된 바이오매스 제품을 석유대체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지역에서 활용하여 쓰레기 제로 사회를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바이오매스 이용 및 활용의 선진지역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농산어촌에 부가함으로써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7) 농림어업자, 농산어촌과 2차산업종사자, 3차산업종사자와의 융합, 연계를 통한 새로운 업태의 창출 등

교육, 의료 및 간호의 장소로서 농산어촌의 활용



농산어촌에서의 편안함, 치유의 기능과 농작업 등의 체험을 통해 교육적 효과, 심신장애의 회복, 기능향상과 건강의 유지 및 증진, 식육 등 농림어업, 농산어촌이 가지는 교육, 보건, 휴양 등 다면적인 기능에 착안하여 농산어촌을 교육, 의료, 간호의 장소로 활용하겠습니다.

농산어촌 여성에 대한 지원



농촌여성은 농업취업인구 299만명의 50% 이상을 차지하며, 농업과 지역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기타의 사업을 창업하거나 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농산어촌 자녀양육지원 도우미 제도를 창설하겠습니다.

또한 농산어촌에서의 여성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기 위해 농협, 산림조합, 어협 등의 이사, 농업위원, 토지개량구(土地改良区) 이사에 대해 지역의 실태에 맞게 여성등용의 수치목표를 설정하고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형 농업의 진흥



소비지인 도시근교의 농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도시에 공급하는 것은 식탁과 농지의 거리단축, 신선도의 유지, 수송에 드는 비용의 경감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시의 농지는 녹지대 역할이라는 생활환경에 관한 효용이나 식품폐기물의 사료, 비료화에 의한 재활용이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형 농업의 다양한 역할에 주목하고 그 진흥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사하야(諫早)만 간척사업



이사하야만 간척사업은 간척사업과 아리아케해(有明海) 환경변화와의 인과관계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얻은 후, 지역의 의견에 의해 아리아케해 재생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방개문에 의해 이주정착농민의 영농에 염해(塩害) 등의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대책을 마련 이주정착농민의 이해를 얻겠습니다.

농협 등 개혁



농협, 어협, 토지개발구, 산림조합 등의 활동에 관해서는 조합원의 편리성 등의 관점에서 사업의 종합적, 일체적인 운영을 확보하고, 경영의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원칙에 준거하여, 농협 등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것 외에 새로운 농협조직 등이 활발하게 설립되도록 조건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중소기업정책의 강력한 추진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원동력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소기업 관련에 산은 주로 경제산업성, 재무성, 후생노동성의 세 성청이 관할하고 대책도 별도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적 행정이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시책이 늦어지고 있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되기에서 중소기업 시책 전반을 일원적으로 담당하는 대신을 임명하겠습니다.

중소기업현장 제정



중소기업이 활력을 가지고 빛을 내며, 안정적이고 건강한 국민생활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중소기업현장을 제정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지침으로 (1)인재육성, 직업훈련의 충실 (2)공정한 시장환경의 정비와 정보공개 (3)중소기업 금융의 원활화 (4)기술력 발휘와 향상 (5)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구조 만들기, 등을 정하겠습니다. 또한 이 중소기업현장은 현행 중소기업기본법과는 달리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뿐만 아니라, 문부과학성, 총무성, 후생노동성을 비롯한 정부전체가 경제정책의 중심으로 중소기업대책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침으로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책으로서 인재육성·직업훈련의 충실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학교 교육의 모든 단계에서 어린 나이부터 근로의 소중함과 기업가정신의 중요성

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전문학교, 각종학교의 역할을 중시하고 사회 인이 평생 동안 고급기능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시장환경의 정비 · ‘중소기업이지메방지법’의 제정



부당한 영업이익과 우월적 지위남용에 의한 ‘하청이지메’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이지메방지법’을 새롭게 제정하여 대기업에 의한 부당한 가격할인과 할당량을 정한 판매, 서비스 강요 등 불공정 거래를 금지하는 한편, 독점 금지법의 엄격한 운용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개정독점금지법에서 정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의 금지에 대해서는 즉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하청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하청업자의 대금채권을 보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능강화와 체제충실을 도모함과 동시에 심판제도는 폐지하겠습니다.

중소기업금융 원활화



대출시 부동산담보, 인적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자금조달체제의 정비, 안정적인 자금공급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자금채널을 창설하고, 정부계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개인보증을 철폐하겠습니다. 또한 자살의 큰 요인이 되고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에 대해 폐지를 포함하여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금융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당면한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 채무상환 기한연장,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지원을 하겠습니다. ‘특별신용보증’ 제도를 부활시키고 보증제도를 보다 사용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안전망용자(원유폭등 관계)의 과거대출의 지연변제를 인정함과 동시에 안전망 신용보

중의 대상업종을 중소기업청 관련 총 900업종(창업 후 3년 이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역금융원활화법’을 제정하고, 지역에 대한 기여도 및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상황 등을 금융기관이 정보공개하는 룰을 설정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기술력의 발휘와 향상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대기업이나 외국기업의 요구와 매칭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쌓아온 기술력이 차세대에 적정하게 계승되도록 세제의 재검토 등 환경을 정비하는 한편, IT, 바이오, 나노, 환경, 에너지 등 첨단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연구비를 대폭 늘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민관연계를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술력은 있는데 브랜드(신용)가 없기 때문에 해외진출 할 수 없는 중소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경험이 있는 상사 및 메이커 등의 민간 OB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판로확대, 무역투자 등의 조언, 인맥의 소개 등을 하는 제도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정부개발원조(ODA)의 해외사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는 구조만들기



중소기업 경영자와 정부 관계자, 금융 관계자의 정책협의의 장을 마련하는 등 중소기업 경영자의 목소리를 중소기업정책의 기획입안 및 정책평가에 반영시키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산업과 고용을 지키는 중소·소규모기업 지원세제



중소기업에 관련된 법인세 경감세율을 당분간 11%로 하겠습니다. 특수지배동족회사의 임원급여의 손금불산입 조치는 폐지하겠습니다.

사업승계세제에 대해서는 비상장 주식 등에 관한 상속세의 납세유예제도의 확실한 운용을 도모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의 사업승계의 원활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예산 3배 증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대폭증가를 실현하겠습니다. 현재의 중소기업 대책 예산에 더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대응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상, 금융상의 조치에 필요한 예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의 강화를 위한 예산 등의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제조업 정책 추진



우리나라의 제조업이 국제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조현장에서 '제조 능력'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조 인재'의 확보, 숙련기능자의 퇴직에 따른 기능계승교육의 추진, 연구개발투자의 촉진, 지적재산의 이용촉진 등의 지원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



개별보조금의 폐지 및 일괄 교부금화, 권한이양 등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함으로써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기업, 인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권한, 재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촉진, 지역의 전통적인 문화, 기술의 활용 촉진 등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나 지역펀드의 체제정비 등 지역요구에 맞는 시책을 신속하게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의 발신을 강화하거나, 사업 집적력(集積力)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경제와 지역 중소, 소규모기업의 활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심 시가지·상가 활성화



지역커뮤니티 재생을 위해 상점가의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층에는 상가, 2층 이상을 고령자를 위한 케어가 가능한 임대주택으로 하는 복합 건축물의 건설 등을 통해 ‘주상 일체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탁아소와 주차장, 주류장 등을 정비하고, 소비자가 부담 없이 상가에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겠습니다. 창업자를 위한 SOHO(재택근무 소규모 사무실)의 활용이나 행정창구 설치에 의해 빈 점포나 나대지의 이용을 추진하겠습니다. 후계자 부족으로 고통 받는 상가의 새로운 담당자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도시경관의 향상, 방재시설과 정보통신기반의 정비, 전선의 지하화 등을 촉진하고, 배리어프리의 아름다운 상가를 만들겠습니다.

상가에 입점하는 대형 매장이나 체인점 등의 적극적인 지역공헌활동 참여를 장려하겠습니다.

지적재산입국 실현



국제경쟁력 강화,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지적재산권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적재산기본법을 더욱 구체화하여 중소기업,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강화, 지적재산권 분쟁처리능력의 강화,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가 육성,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산학연계 강화, 연구개발예산의 재검토, 연구자의 의욕향상에 연결되는 환경의 정비, 기술이전기관(TLO)의 충실, 모방품 대책 및 특허권 침해대책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창업·벤처 지원



벤처기업의 창업을 쉽게 하는 동시에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일본판 SBIR 제도개선과 STTR 제도의 도입)²⁸⁾. 벤처기업의 주식 구입 시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과 엔젤 네트워크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으로부터의 스핀 아웃(spin out, 구조조정을 계기로 한 개업 등)에 대한 특별용자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포함해 종합적인 창업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100만개사 창업’을 목표로 산업의 경쟁력을 재생시키겠습니다.

사업규제의 원칙철폐와 차세대 경쟁력 확보



현행 사업규제는 모두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민간사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개혁하겠습니다. 한편, 공정경쟁의 환경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관업(官業)을 납세자, 생활자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재검토하고 효율성과 질

28) 일본판 SBIR 제도/STTR 제도 : 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중소기업기술혁신제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중소기업기술이전제도). 모두 중소 하이테크, 벤처기업에 대한 보조금 제도.

적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IT, 바이오, 나노, 환경, 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자, 기술자의 질적, 양적 부족 해소를 위해 집중적으로 시책을 전개하고 민간경제의 성장, 확대를 지원하겠습니다.

WTO 교섭의 조기타결



자유롭고 다각적인 무역체제를 지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상(도하 라운드)의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합니다. WTO는 각국의 이해와 의견조정이 난항을 겪고, 다자간 합의형성 방식의 한계가 지적되는 한편, 글로벌 물의 책정, 분쟁해결제도의 충실 등 국제무역에 있어서의 신뢰성, 안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협상의 조기타결을 위해 일본이 리더십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WTO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하기위해 WTO 협정에 노동기본권, 환경조항 등에 관련된 사회조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PA/FTA(경제연계협정/자유무역협정)



EPA/FTA는 세계경제와 산업구조, 고용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침으로 해서 국제경쟁력 강화의 측면에서 적절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이념과 정합성을 요구하면서, 아시아를 향해 열린 일본의 실현, 그리고 미국, EU 등과의 관계강화를 위해 일원적이고 일체적인 협상창구를 만들겠습니다. 식품의 안전, 안정공급, 식량자급률의 향상 등도 염두에 두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역자유화에 더하여 도하 라운드의 협상대상이 된 반덤핑 방지조치 등 무역 룰을 포함한 폭넓은 분야에서의 논의를 촉진하고 무역제한적인 조치와 지적재산권 침해가 되지 않도록 규율강화를 요구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급격한 수입자유화 등으로 인해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세이프 가드가 충분히 작동하도록 발동절차의 탄력화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에너지 안정공급체제의 확립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에너지 안전보장의 확립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수립,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일원적으로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일본의 에너지자급률은 원자력을 포함하여 16%에 불과해 선진국에서는 최저수준입니다. 이에 자급률 목표를 2030년에 30%, 2100년에는 50%로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에너지와 레이 메탈(희귀 금속) 등 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한 체제를 확립하고, 자원보유국에 대한 전략적 외교를 강화하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의 양립을 도모하는 에너지 정책 수립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실효성 있는 지구온난화 대책과의 양립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에너지 절약, 신재생 에너지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경제와 고용을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풍력, 태양, 바이오매스 등의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1차 에너지 총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20년까지 10%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CO₂를 증가시키지 않는 비화석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며, 에너지 공급 인프라의 신뢰성 확보에 주력하고 국민과 기업의 편리성, 경제의 효율성의 손실 없이 저탄소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환경과 에너지이용 효율화에 있어서의 신기술 이전보급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자력 이용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에너지의 안정공급의 관점에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으면서 착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발전소의 사용이 끝난 연료의 재처리와 방사성 폐기물 처분은 사업이 장기적이기 때문에 국가가 기술의 확립과 사업의 최종책임을 지게하고, 안전과 투명성을 전제로 하여 재처리 기술의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가 국민에 대하여 원자력정책에 관한 설명을 철저히 실시함과 동시에, 관련시설이 입지해있는 지자체 및 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충분한 협의가 진행되도록 법적 틀을 만들겠습니다.



과거의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무겁게 받아들여,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원자력 관련사업의 안전확보를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만일에 대비한 방재체제와 실효성 있는 안전검사체제의 확립을 위해 현행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겠습니다. 안전점검기능의 강화를 위해 국가행정조직법 제3조에 의한 독립성이 높은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를 설립하고, 주민의 안전확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원자력발전소의 노화방지대책 등의 방향에 대한 논의를 깊이 하겠습니다.

설비, 기기에 대한 검사, 더 나아가 소프트한 측면도 고려한 소위 ‘품질보증형’ 검사도 포함한 엄정한 검사체제의 운용, 현행의 애매한 트러블 등 보고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사고, 트러블을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는 등 ‘원자력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구체화 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국토정책



현행의 획일적, 수직적인 지역진흥관계제법을 개정하여 지역독자의 사정과 특성에 대응하는 진흥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의 추진과 도시와 농산어촌과의 연계를 도모하고, 지역의 자립화, 다양화를 실현하며 안전하고 안심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국토형성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농산어촌은 초고령화와 젊은 노동자의 유출이 진행되어 과소화에 따른 지역공동체의 붕괴와 농지, 임지 등 국토의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원 확보와 토사유출방지 등 국토환경의 보전기능, 전통문화와 자연과의 공생 등 문화, 여가기능의 충실 등 다종다양한 기능을 살리기 위한 지원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한편, 도시지역은 밀집시가지의 형성과 교통체증 발생 등의 부정적 유산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심시가지의 공동화 문제에 대한 대책, 일극집중 하에서의 대규모 지진 등 격심한 재해의 위험해소를 중점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지역의 휘발유세 면제 등 과소지역대책



과소지역에 대응한 인프라 정비 및 비용감소에 기여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과소지역에서는 뚜렷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 등 인프라 정비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와 케이블 네트워크 등 IT 기술 등을 활용하여 고령자에 대한 생활지원책을 확충하겠습니다.

교통기반정비 등의 공공사업은 도시지역과 과소지역의 격차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공공사업에만 의존하지 않고 각 지역이 특색을 살려 자율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분권의 추진에 더욱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또한 도서지역에서는 공공시설, 설비 등이 충분히 정비되어있지 않고 본토로의 교통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물가고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 본토와의 물가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서지역의 경제활동에 관련된 휘발유세를 면제하겠습니다.

지역활성화에 입각한 관광정책



민주당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담아 성립된 관광입국추진기본법을 기본으로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매력향상을 위한 마을 만들기, 경관형성, 농산촌과 고향마을 만들기 등을 추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 관광정책에 대한 노력을 지원하겠습니다.

각 지역의 역사와 전통, 문화, 나아가서는 귀중한 자연의 보전과 활용을 추진하고 동시에 주민들의 배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휴가, 휴일제도를 재검토하여 보다 유연하게 휴가를 얻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휴일의 분산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교통체계와 경관을 배려한 거리와 교통시설의 정비를 추진하고, 국내외 관광객의 관점에서 관광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2008년 10월 발족한 관광청은 문화의 관점도 가미해 관광입국의 실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인간 친화적인 지역주민의 마을 만들기



이제부터는 획일적인 마을 만들기가 아니라 지자체에 대폭적인 권한과 재원의 이양을 전제로 각각의 기초자치단체가 거리의 특성을 살린 마을 만들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및 시설 등 인프라 정비와 토지의 명산품이나 축제 등 지역사회를 고조시키는 콘텐츠를 최적으로 조합시켜 주민, NPO 참여에 의한 행정 등의 운영을 하여, '사람의 온정을 느낄 수 있는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발전을 계속하는 대도시와 상가의 공동화 및 인구의 과소화, 사회 기반정비의 쇠퇴 등에 직면하는 지역과의 격차확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의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 건축기준법을 단체(単体)규정으로 특화하고 대담한 지방분권을 전제로 도시계획법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 만들기 법'을 제편, 경관, 마을 만들기의 기초원칙을 명기한 '경관, 마을 만들기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 등에 의해 커뮤니티와 아름답고 활기찬 마을재생, 보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고령화 등 사회환경에 대응한 마을 만들기



고령화사회, 인구감소사회 등을 배려한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통 배리어프리 법'과 건축물에 관한 '하트 빌딩 법'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로 통합되었지만 앞으로도 더욱 개선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이동의 권리, 사회참여의 기회보장 (2)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이동원활화의 실시를 규정 (3)고령자, 장애인 등의 의견을 반영하는 구조와 이용하기 쉬운 시설의 정비 (4)관련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휠체어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는 등입니다. 이동제약자의 자립과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계속해서 배리어프리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가 각 지자체에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서서, 경직적인 접속의무를 검토하는 법 개정을 실시하여 하수도에 편중한 오수처리대책을 고치겠습니다.

합병정화조는 오수처리능력이 하수도와 비교해서 손색이 없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것, 과소지역에 있어서 경제효율에 있어서 뛰어난 것, 순환형 사회의 형성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공공 하수도의 배수구역 내에서 합병처리정화조로 오수를 처리하는 경우 공공용수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의 견지에서 크게 잘못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접속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종래의 자택소유권 취득에 대한 편중을 시정하고,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주택정책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생활, 주택 곤궁자에게 있어 공영주택 등은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고령자 및 장애인, 육아 세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의 기능 충실, 임대시장의 활성화, 임대료 보조 등의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우량주택의 보급촉진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배리어프리화, 내진화를 목적으로 한 기존주택의 활용, 개수와 이를 위한 기록관리, 심사, 진단 등 시스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주거생활을 확보하겠습니다.

건축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의 전면적인 재검토, 주택건설에 관련된 자격, 인허가의 정리, 간소화, 관련 조직의 정리, 축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다 세심한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일괄 교부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신축주택은 긴수명, 내진, 단열, 배리어프리로 재건축 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에 견딜 사양을 기준으로, 기존주택의 리모델링과 개축도 추진하겠습니다. 외단열, 고단열, 창문의 보수 등을 촉진하고, 주택성능표시의 한 방법으로 해당 주택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을 표시하는 ‘에너지 증명서’를 보급시키겠습니다.

화장실, 욕실의 개량, 옥내의 단차해소, 계단의 경사도 완화 등 고령자가 살기 쉬운 주택 리폼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조성하고 전력을 전력회사에 매입하는 제도도 확충하겠습니다. 저탄소 사회를 향한 국산목재로 만든 장수 목조주택을 추진하겠습니다.

새집 증후군 대책과 석면노출대책 등 사람 친화적인 가옥 만들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중고주택물건에 하자가 없는지 등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을 육성하여 중고주택을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시공현장의 기록을 거래 시 첨부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나의 업자가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에서 수수료를 받는 양손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겠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육아 세대도 살기 좋은 우량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정비하겠습니다. 임대 거주자에 대한 임대료 보조와 소득공제 등 세제지원도 창설하겠습니다. 정기전세제도의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주택론을 논 리코스(non-recourse) 형식으로 하는 환경도 갖추겠습니다. 현재는 토지의 가치로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리버스 모기지’(주택담보대출)는 사용하기 쉬워집니다.

목재주택과 국산재의 진흥으로 지역이 숨 쉬는 집 만들기



목재주택산업을 지역자원활용형 산업의 중심으로 하여 지역의 자립과 진흥을 추진하겠습니다. 전통공법을 계승하는 기술자, 건전한 지역의 건설, 건축산업을 육성하고, 시공자의 기능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주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간벌이 늦어지고 있는 곳은, 집약화 시업에 의해 산촌을 활성화하고 가까운 산에서 채취한 나무로 집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합교통비전을 실현



다음의 세 가지 관점에서 중합교통비전을 책정하고, 그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1)자동차 중심의 거리조성정책을 전환하여 노선버스나 궤도계 교통(철도, 노면전차, 차세대 노면전차시스템(LRT) 등)에 충실 (2)도로를 정비하는 비용을 버스사업자 등에 보조하여 서비스가 향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동곤란자의 편리성을 확보 (3)노선버스나 궤도계 교통기관 등 대중교통을 재검토하고, 환경부하가 감소하는데 연결되는 모드(교통 기관)의 정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기본법 제정



‘교통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의 ‘이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중합교통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국민의 ‘이동의 권리’를 명기한다. (2)국가 교통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적인 교통인프라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중복에 의한 공공사업의 낭비를 감소시킨다. (3)환경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4)도도부현, 시정촌이 책정하는 지역교통계획에 의해 지역주민의 요구에 합치하는 차세대형노면전차시스템(LRT)과 커뮤니티버스 등의 정비를 추진한다. 등 입니다.



각 지역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항공정책을 전개하겠습니다.

현재 국제거점공항은 나리타, 간사이 공항, 중부에서 여객기준으로 일본전체의 9 할 정도, 화물기준으로 95%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제적인 대교류시대를 맞이할 것을 생각하여 세 공항에만 집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홋카이도, 후쿠오카, 오키나와 등 공항의 기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착륙료와 항공기 연료세 등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비용을 감소시켜 장벽을 없애 오픈 스카이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공항은 근거리 국제선, 특히 아시아 권내 교류를 중심으로 국내 효율의 용이성을 높이도록 종합적인 항공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경영수지의 공개를 추진하겠습니다.



국제물류와 국내물류의 거점의 중심지역을 명확히 하여 기동적인 정책을 확립하겠습니다.

국제물류에 대해서는 부산, 싱가포르와 홍콩 등 아시아 지역의 항만이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일본항만의 국제경쟁력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국내물류에 대해서는 해외로부터 일본에 도착한 물건, 그리고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는 물건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과 생산지 및 소비지로서의 일본의 매력을 향상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물류의 관문으로서의 공항과 항만에 대해서는 모든 창구에서 효율화를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특정중요항만 중 몇몇 항만, 특히 소비지에 대한 근접성이나 고 규격 도로 등과의 접속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의 사고방식에 따라 특정 국제물류거점의 24시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그 외의 공항과 항만은 국내물류의 환경부하가 작은 수송수단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새로운 해양정책의 전개



동중국해의 가스전 등 우리나라의 해양권익, 자원을 지키기 위해 민주당이 주도하여 성립시킨 해양기본법 등을 엄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해상보안청의 체제강화를 도모하는 건지에서 해상보안청 직원의 적정한 확보,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정, 항공기 정비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권익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오키노토리시마(沖ノ鳥島)의 보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제화물 컨테이너 운송의 안전 확보



국제해상 컨테이너수입화물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선적된 상태나 무게, 내용물이 화주 이외에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국제화물 컨테이너수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국제화물 컨테이너수송에 있어서의 수송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규정한 법률을 제정하겠습니다.

(1)화주가 컨테이너의 중량, 화물의 품목, 선적된 상황 등이 기재된 컨테이너 정보서면을 작성하여 트럭 사업자에게 교부한다. (2)트럭 사업자는 컨테이너 정보서면을 트럭 운전사에게 교부한다. (3)트럭 운전사는 컨테이너 정보서면을 접수하지 않으면 컨테이너 운송을 해서는 안 된다.

택시행정의 근본개혁과 지역공공교통의 활성화



민주당은 '택시개혁비전'을 정리하여, (1)택시는 대중교통기관이다 (2)택시행정의 지방분권을 실시 (3)이용촉진과 수요확대를 위해 약질사업자 배제와 공급조절의 실효성이 있는 구조를 구축 (4)안전을 배려한 적절한 요금을 원칙으로 한다. 라는 기본 방침에 따라 택시관련개혁 2법안을 제출했지만,

운임, 요금의 허가기준의 재검토 등 그 제안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져 정부 제출의 특별조치법안이 수정성립 되었습니다. 이 개정 택시관련법의 엄정한 집행을 도모하고, 검토조항에 담긴 과제에 대해 성안을 얻는 등 앞으로도 택시행정개혁에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또한 버스, 선박, 철도를 비롯해 차세대노면전차시스템(LRT) 등의 도입을 포함하여 지역의 공공교통의 유지, 재생, 활성화 시책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교통면에서의 환경부하 경감



물류분야에서 트럭에 의한 수송과 공존을 도모하면서 환경부하가 작은 선박 및 철도운송으로 전환하는 정책²⁹⁾을 전개하겠습니다. 화주가 수송기관을 선택하는 입장에 있는 것을 중시하여 화주 등의 모달 시프트 추진계획의 책정과 실시상황보고를 의무화 하겠습니다.

자전거는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것과 동시에, 건강증진 등에서 큰 장점이 있는 반면, 교통사고 발생, 방치자전거 등의 문제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관한 규칙과 매너의 이해, 준수 진행하도록 지자체, 민간 자원봉사자도 함께하면서 안전, 쾌적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계몽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전거도로의 적정한 정비, 자전거 통행 존 설치에 관한 명확한 지침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상가의 빈 점포를 이용하는 등에 따라 주차장의 정비를 도모하겠습니다.

철도정책과 철도인교 추진



국가전체의 종합교통체계를 확립하고, 그 중 신칸센 정비의 방식에 대하여 자리매김한 후, 국민의 이해를 얻으면서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9) 모달 시프트(modal shift) 정책이라고 불림.

실현을 위해 도쿄, 나고야 사이에서 실험, 협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중앙리니어신간선에 대해서도 세계의 첨단기술을 늘리고, 활용하는 관점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경제발전과 온난화대책의 양립이 요구되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일본의 철도기술을 세계에 발신하겠습니다.

도로행정 등의 근본개혁



도로를 둘러싼 정책을 중앙집권국가의 모습을 바꾸는 돌파구로 규정하고, 도로 기타 사회자본정비에 관련된 행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휘발유세 등의 잠정세율의 완전폐지, 본측 세율부분의 일반 재원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국가는 고속자동차국도를 지방은 스스로가 필요로 하는 도로를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직할국도, 보조국도 등의 관리구분을 재검토하여 도로정비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를 위해 (1)특별회계의 폐지 (2)지방재원의 확보 (3)국가가 정비해야 할 고속도로의 선정 (4)국토개발간선 자동차도 건설회의의 폐지 (5)도로정비에 있어서의 국가와 지방의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6)비용편익분석의 엄격한 실시를 포함한 비용의 철저한 재검토 (7)새로운 사업평가방식의 책정 (8)독립행정법인 및 공익법인 등 낙하산 단체의 철저한 정리, 등을 하겠습니다. 도로, 하천, 항만 등 공공사업의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아울러 관계현지기관을 원칙폐지, 축소하겠습니다.

고속도로무료화



고속도로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하겠습니다. 이것에 따라 (1)생활비, 기업활동비용의 인하(최대 2.5조엔의 국민부담의 경감이 가능, 가계소비증가와 기업의 설비투자, 임금인상 등의 내수확대) (2)지역활성화(생활도로, 지역도

로로서의 이용, 고속도로 휴게소의 활용을 포함한 관광산업활성화 등) (3)온난화 대책(지정체의 해소, 완화, CO₂의 발생억제 등) (4)낭비의 근절(하이패스 건설억제에 의한 재정부담의 경감 등), 을 도모하겠습니다.

수도고속, 한신고속 등 체증이 예상되는 노선, 구간 등에 대해서는 교통수요관리(TDM)의 관점에서 사회실험(5할인, 7할인 등)을 실시하여 영향을 확인하면서 무료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실시에 있어서는, 도로회사 직원의 고용, 수도권속, 한신고속 주주인 자치단체의 이해, 경합교통기관에 대한 영향 및 교통약자 등에 대한 충분한 배려를 강구하겠습니다.

교통안전위원회의 엄정한 운용



정부의 규제완화의 결과, 안전이 경시되고 노동조건이 악화되었습니다. 민주당의 요구로 수정성립된 법률에 따라 교통안전위원회를 엄정하게 운용하고, 공공교통 등 안전대책의 총점검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사업개혁



성청의 수직적 낭비를 반성하기 위해, 사회자본정비관련계획을 단일화하여 국회승인사항으로 함과 동시에, 재평가, 사후평가 방식을 담은 ‘공공사업 컨트롤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낭비를 없애고 효율적이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진정으로 필요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중소건설사업자 대책



현재의 어려운 경제정세를 감안하여 기동적인 중소기업 재생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정리통합, 협업화, 재해복구에 대한 지식을 비롯한 본업을 살린 노력과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진출, 대처실적의 입찰자격요건 등에서의 평가, 치밀한 안전망 확보 등 구조전환에 대한 지원책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공수법(官公需法)의 적용추진, 공정함을 목표로 한 입찰방식의 확립 등에 의해 중소기업체의 수주기회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건설업법의 준수 등에 의한 원하청, 하청관계의 적정화, 고령화 담당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기능승계 등에 관한 지원, 전문학교와 지역건설업체가 연계한 인재육성책의 강화, 각종 대출제도와 보증제도를 활용한 공공융자제도에 의한 지원의 확충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대형공공사업의 재검토



가와베가와(川辺川)댐, 안바(八ッ場)댐 건설을 중지하고 생활재건을 지원하겠습니다. 그에 따라 ‘댐 사업의 폐지 등에 따른 특정지역의 진흥에 관한 특별조치법(가칭)’의 제정을 목표로 국가가 행하는 댐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등에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공공시설의 정비와 주민생활의 편리성 향상과 산업의 진흥에 기여하는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해당지역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개인금융이니셔티브(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는 도로, 교량, 감옥과 관공서 청사 등 공공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자금조달을 포함하여 민간 사업자에 맡김으로써 공공사업의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큰 목적은 사업에 관련된 위험을 민간 사업자에게 지게 함으로써 민간의 경영감각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비용과 품질의 균형 잡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PFI 제도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입하는 수치목표를 결정함과 동시에, 촉진을 저해하는 법률, 정성령, 조례 등의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의 창의노력을 살린 수준 높고 효율적인 사업을 도입하게 되어, 세금의 낭비를 없애게 됩니다.



댐은 하천의 흐름을 막아 자연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초래함과 동시에, 퇴사(모래가 모이는 것)에 의하여 수십 년에서 백 년간 이용 불가능하게 됩니다. 환경부하가 큰 댐 건설을 계속하는 것은 장래에 큰 화근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의 방재 능력을 살린 유역치수, 유역관리의 사고방식에 기초하여 삼림의 재생, 자연호안(自然護岸)의 정비를 통해 삼림이 가지는 보수(保水)기능과 토사유출방지기능을 높이는 '녹색댐 구상'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획 중이거나 건설 중인 댐에 대해서는 이것을 일단 모두 동결하고, 일정기간을 마련하여 지역의 주민과 함께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치수정책의 전환을 도모하겠습니다

환경정책(전반)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목표로 환경용량 내에서의 순환형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종래의 경제활동을 환경의 관점에서 질적으로 재검토하고, 더욱 더 환경기술, 에너지 절약기술, 자원절약, 재활용 기술 등의 개발, 보급, 환경보전을 사업발전에 연결시키는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 등 환경에 대한 대응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부하를 낮추고 환경친화형 경제발전에 연결되는 이른바 환경과 경제가 통합된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아름다운 자연과 생명을 키우는 지구를 미래세대에 계승해 가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만들기 위해, 환경의식의 향상, 시민참가, 정보공개, 양호한 자연의 보전과 회복, 공정하고 환경영향을 내부화하는 시장구축, 도시계획제도를 포함한 광범위한 제도의 개혁, NGO에 의한 국제공헌의 적극적인 촉진이나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의 창설



지구온난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25%, 장기적으로는 2050년까지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60% 이상의 온실가스배출량 삭감을 실현하겠습니다.

(1)중장기 목표 설정 (2)국내배출량 거래시장의 창설 (3)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의 강력한 추진 (4)지구온난화대책세의 도입 (5)에너지 절약 철저 (6)삼림흡수원 대책 추진 (7)환경기술개발 (8)환경외교 촉진 (9)탈 프름가스의 적극적인 추진 (10)CO₂의 '가시성' 추진 (11)도시 과열화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것에 의해 지구환경, 생태계의 보전, 새로운 산업의 창출, 취업기회의 확대 등 환경과 경제발전의 양립을 도모하겠습니다.

실효성 있는 국내배출량거래시장의 창설과 지구온난화대책세의 창설



캡&트레이드(Cap&Trade) 방식에 의한 실효성 있는 국내배출량 거래시장을 창설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대책세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지방제정에 배려하면서 특정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의한 제도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CO₂의 '가시화' 추진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한 배려의 소비행동을 촉진하기위해 CO₂의 '가시성' (탄소공개제도)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의 청구서나 영수증에 CO₂ 배출량 등의 기재를 추진하겠습니다.

에너지 이외의 상품공급, 판매에 관해서도 CO₂ 배출에 관한 정보를 통지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의 상품선택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증권보고서 등에 온실효과가스배출량 및 지구온난화에 관련된 위험대책을 명시하는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고정가격 매입제도의 도입



재생에너지의 이용촉진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새로운 기술개발, 산업육성을 추진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재생가능 에너지에 의한 발전량

의 전량을 일정기간, 일정가격으로 매입하는 고정가격 매입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전력망 등의 기술개발, 보급을 촉진하고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재정적인 조치를 확충하겠습니다.

주도적인 기후변동·환경외교의 전개



코펜하겐에서 2009년 12월 개최되는 COP15에서는 포스트 교토의정서를 향한 새로운 프레임 구축이 주요한 의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화의 관점에 입각해서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배출국가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후변화의 국제협상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겠습니다. 또한, 지구온난화 대책에 이바지하는 기술이전을 촉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부개발원조(ODA)의 환경분야에 대한 집중, 특화 등 환경외교를 전개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습니다. 동시에, 산성비와 황사 등 국경을 넘는 환경피해에 대해서도 일본의 환경안보의 관점에서 국제적인 협력 하에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방지·프롬인수



프롬류는 강력한 온난화 물질이며,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등, 그 회수, 파괴, 대체물질에 대한 전환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기 중의 수명도 길어서 일단 대기 중에 방출되면 지구환경에 대해서 장기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민주당이 일찍이 주장해왔던 프롬의 회수, 파괴법이 성립했지만, OA기기 등에 사용되는 먼지송풍스프레이(dust blower) 및 단열재의 사용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부하가 적은 프롬 대체 물질에 대한 전환, 사용규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활습관의 변화와 의식개혁이 필수적이며, 가정을 비롯한 학교, 지역, 직장 등 모든 장소와 기회를 통해서 환경교육 추진이 중요합니다. 민주당 주도로 초당파에 의한 법률이 성립했지만, 완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 앞으로도 환경교육의 본연의 모습에 대해 국민적인 논의를 환기하고 광범위한 검토를 추진하여 가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자연과 농업에 친해지는 관광) 등을 추진하고, 자연환경보전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자연환경, 생물다양성의 중요성, 희소성, 경제성을 배우고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환경시정법)이 시행되어 10년이 경과하여 그 재검토의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시민참여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로 시민참여의 기회를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실시와 평가를 사업자 스스로가 행하는 제도로 되어있어 평가의 객관성에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때문에 환경시정법을 개정하여 대상사업의 범위확대, 평가항목의 추가, 정보공개와 시민참여 기회의 확충 등을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 의한 시민참여 기회의 확충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사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전략적환경시정제도(SEA)의 도입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환경조형형 공공사업



환경사정법의 성립에 의해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환경배려를 하게 되었지만, 아직도 공공사업에 의한 자연파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종래 행하여진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환경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고, 환경복원 조치 등의 대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공사업은 국가사업을 한정함과 동시에, 댐은 일정기간 그 건설을 동결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댐에 의존하지 않고 삼림의 보수력 등에 의해치수를 행하는 '녹색 댐 구상'을 구체화 하겠습니까. 이사하야만 간척사업과 요시노(吉野)강 하구언 개축사업, 아와세(泡瀬)갯벌 간척사업 등 환경부하가 큰 공공사업은 재평가에 의한 재검토나 중단을 철저히 하겠습니까.

한편, 하천의 재자연화와 습지의 복원, 생물의 군집장소의 정비 등 환경재생을 위한 공공사업을 지역의 NGO 등과 협력하면서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순환과 공생을 위한 사회자본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조사·연구, 환경보전제도의 충실



환경문제에 관한 과학적 지식의 집적을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수집이나 국제협력 등의 예산을 대폭 증액시키겠습니다. 환경부하가 적은 과학기술을 보급시키기 위해 경제적 조치 등의 도입에 따른 유도방법이나 재정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린계약



민주당이 주도하여 제정한 '국가 등에서의 온실가스 등의 배출 삭감을 배려한 계약추진에 관한 법률'(그린 계약법)에 기초하여, 국가 등이 우선하여 단순한 가격의 장점만이 아닌 최선의 환경성능이 있는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

는 자와 계약할 수 있도록 계약제도의 본연의 자세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환경건강피해대책



환경건강피해의 회복, 경감책 및 피해방지대책의 신속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해 ‘환경건강피해자 등 구제기본법’을 제정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피해자 구제에 관한 기본시책의 책정 (2)원인규명, 조사, 연구를 국가 등에 의무화 (3)인정기준의 완화 (4)행정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높이고 환경건강피해 등 기준책정 등 위원회의 설치 (5)소송관련 지원제도(상담창구의 설치, 전문가, 해외지식 등의 소개 등을 국가 등에 의무화)의 정비 (6)구제급여제도(의료비, 요양비, 교통비 등)의 정비, 등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많은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되게 됩니다.

또한, 미나마타병, 석면으로 인한 피해 등 개별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환경건강피해에 대해서는 개별입법을 통해 신속한 피해자 구제와 피해 확대방지를 도모하고, 포괄적인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나마타(水俣)병 문제 대책



민주당은 171회 정기국회에 ‘미나마타병 피해의 구제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2004년 10월 최고재판소 판결을 존중하고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인정기준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을 존중해야한다는 것을 명기하고, 급여지급액은 300만엔으로 했습니다. 구제 내용은 (1)일시금 (2)의료비 (3)요양수당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피해의 철저한 규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 등도 포함하여 잠재환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도법안을 제출한 여당과 협의하여 여당안의 지역지정 등의 해제에 관한

조항의 삭제, 대상이 되는 증상의 확대, 질소분사에 대한 제동 조치 등을 이루어 내어 법안 이름에서 ‘최종’의 문구를 삭제하고 법안의 실태적 규정에 대해서도 ‘최종 해결’이라는 문구에서 ‘최종’을 삭제하고 단순히 ‘해결’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의 경위에 의하여 민주당이 목표로 한 내용이 거의 포함된 ‘미나마타병 피해자 구제 및 미나마타병 문제해결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중의원 환경위원장 제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법안의 엄정한 집행을 포함, 앞으로도 미나마타병 피해자의 전면적인 구제에 노력해 가겠습니다.

종합적인 인화물질대책



수직적 행정을 배제하고 사람의 생명, 건강과 환경을 지키는 입장에서 종합적인 화학물질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화학물질의 제조에서 폐기까지 전체를 예방적 대처방법에 기초하여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 법제도의 구축을 위해 ‘화학물질 정책기본법(가칭)’의 제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가네미유증(カネミ油症) 피해자대책



다이옥신류가 혼입된 식용유의 섭취에 의해 큐슈지방을 중심으로 1968년에 발생한 가네미유증 사건에 대해, 민주당의 법안제출이 계기가 되어 환자 구제를 위한 법률이 2007년에 성립되었습니다. 앞으로 다이옥신류에 의한 건강피해의 전체상을 국가책임 하에 파악하고, 의료의 자기부담 분의 지원이나 건강관리수당, 특별유족급여금의 지급 등 현재까지도 건강피해로 고통 받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시크 하우스(sick house)³⁰⁾ 대책



건축물에서 유래하는 화학물질피해를 방지하고 새집 증후군 피해자가 더 이상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1)건축물 완성 후에 거실에서의 유해화학물질농도 측정을 의무화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개선을 요구 (2)대규모 공공건축물에 있어서 유해화학물질의 정기적인 측정을 의무화,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크 하우스 대책 2법’의 제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새집 증후군이나 화학물질 과민증 등 화학물질로 인한 건강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실태조사와 발병 메커니즘의 해명 등 과학적 지식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피해자에게는 효과적인 치료체제의 확립, 도도부현마다 장기체제형 요양시설을 건설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살충제에 의한 건강피해(한약물질과민증이나 급성중독 등) 대책



살충제 등에 의한 건강피해의 예방을 위해 (1)살충제 등의 사용법이나 사람의 건강과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을 명기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2)주거지역 등에서 대량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켜야 할 룰을 도도부현 지사 등이 정하며 (3)안전한 살충제의 연구개발을 제조업체의 노력의무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살충제규제 2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석면 없는 사회실현



석면 없는 사회의 실현을 위해 ‘석면대책 종합적 추진법’을 제정하여 기존 석면의 파악, 관리, 제거, 폐기 등 일관된 종합 대책을 실시하겠습니다.

석면이 포함된 제품 및 건축물 등에 대하여 전국조사와 정보공개를 실시하고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유해성, 비산성(飛散性), 이용상황에 대해 우선순

30) 새집 증후군을 말함.

위를 정한 후, 단계적, 계획적인 제거, 폐기 등 거기에 이르는 동안의 적절한 관리를 촉진하고 비산방지대책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련 성청, 제법령 간의 불일치를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법령대응을 포함하여 그 간극을 메꾸어 나가겠습니다. 석면 함유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대해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과거의 법령이나 통달을 정사하여 행정책임을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피해자 보상, 건강관리, 비산방지, 해체나 폐기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기금을 창설하겠습니다. 또한, 석면함유 폐기물의 저렴하고 안전하고 해롭지 않은 기술확립을 위한 연구를 촉진하겠습니다.

석면 건강대책



피해자의 속성에 따른 구제내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틈새 없는 구제를 실현하기 위해 수직적 행정을 배제하고 정보공개, 정보개시의 촉진, 환자, 가족을 비롯한 관계자의 참여를 확보하면서 석면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석면피해자구제법에 의한 구제수준을 산재보험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습니다. 석면관련 질환에 관한 정보개시, 악성중피종(惡性中皮腫)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중피종 등록제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석면폐 등 석면관련 질환을 구제제도의 대상질환에 추가하는 등 구제대상을 넓혀 양질의 진단 및 치료,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가족과 주변주민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무료검진 등 주민 등에 대한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석면 등에서 기인하는 업무재해에 대해서는 인근공장노동자, 복귀전 오키나와 미군기지에서의 노출을 포함하여 시효기간이 지나서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수첩제도를 개선하여 당해기업이 도산 등을 한 경우는 국가에 의한 검진 등 건강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미소립자상물질(微小粒子狀物質) “PM2.5”의 생체영향에 대한 우려에 더하여 새로운 공해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기준을 조속히 설정하고 규제 등의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 NOx·PM법에 근거한 대책지역이 있는 대도시권에서의 이산화질소 농도나 부유입자상물질(浮遊粒子狀物質, SPM)의 환경기준이 아직까지도 미달성이기 때문에 도로환경대책(교차로의 입체화나 건널목 개량 등), 유입차 대책(로드 프라이싱(road pricing)³¹⁾ 제도의 도입 등)이나 배기가스 삭감대책(저공해 자동차의 도입촉진 등)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제반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대륙으로부터의 대기오염물질의 유입이나 질소화합물(NOx)과 휘발성 유기화합물(VOC)의 농도비의 변화 등이 관계하고 있다고 하는 광화학 옥시던트(Ox) 농도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월경대기오염방지의 국제룰 책정이나 대기오염의 악화가 두드러진 것으로 지적되는 중국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충, 강화를 하겠습니다.



공장 이주지 등에서 화학물질에 의한 토양오염이 발견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2003년에 토양오염대책법이 제정되었지만, 대상범위가 좁은 한계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민주당 주도로 수정성립된 개정토양오염대책법의 엄정한 집행을 감시하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이나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대처, 정보공개 등 정확하고 확실한 대응을 추진하겠습니다.

31) 도심부에 유입되는 차에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소위 혼잡세로 불림.



일본의 물의 순환상태를 보면 성청간의 수직적 물 관리에 의해 자연환경을 활용한 순환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세분화되어 목적도 다른 삼림, 하천, 해안 등에 관련된 모든 법률을, 물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환경지향적인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겠습니다.

그 때에는 주민참여와 정보공개에 의해 지역의 자연적, 문화적, 사회적 특성에 따라 주민이 삼림이나 하천의 문제에 신중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법률로 정하겠습니다.

또한 물 부족이 심각한 나라들의 빈곤층에게 충분하고 안전한 물이 공급 되도록 적극적으로 원조하겠습니다.



자원절약형의 순환형사회로의 전환을 실현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나 부적절한 처리를 막기 위해 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1)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미연방지를 철저히 하는 등 폐기물, 재활용 정책의 원칙 확립 (2)제품제조자의 폐기제품 재수거 대상품목의 범위 확대 (3)정보공개에 의한 시책의 투명화 (4)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 구분의 재검토(사업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모두 사업계 폐기물로 정리하는 등) (5)배출자 책임의 철저 (6)재활용 명목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 (7)계획적인 자원절약, 자원순환의 추진 (8)재활용률, 회수율 인상이 필요한 제품 지정 (9)재활용 재료의 규격화에 의한 이용확대 (10)벌칙강화 등을 통한 폐기물 관리의 철저, 등을 도모하겠습니다.

확대생산자 책임을 중시하고 재활용 비용의 부담방식을 다양한 관계자가 하나가되어 검토하고, 각 리사이클법에서의 비용징수시기를 통일하는 등 이해하기 쉬운 제도의 구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의 재활용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제도를 창설하는 등 제조사업자에 의한 리사이클을 지원하겠습니다.

가전에 대해서는 (1)재활용 대상 가전제품과 PC의 재활용 비용의 징수시
기의 통일(모든 제품에 대해 가능한 한 구입 시에 재활용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를 검토) (2)재활용 대상 품목확대, 등의 재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식품에 대해서는 아직 폐기 처리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등이 상당량
있는 실태를 감안하여 바이오매스의 활용 등에 의한 재활용을 추진하고 모든
음식물 쓰레기가 재활용되는 사회를 지향하겠습니다.

용기포장에 대해서는 재활용의 추진을 도모하는 동시에 환경부하 및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는 재사용의 추진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예탁금을 반납하는
보증금제도에 의해 뒷받침되는 재사용 용기의 보급촉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
진하겠습니다.

폐 첨단기술제품 함유 희귀금속 재자원화체제 구축



대량으로 폐기되는 첨단기술제품(휴대전화, PC 등)에는 유용한 희귀금속
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은 희귀금속의 자원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폐 첨단
기술제품의 국내회수시스템의 구축에 의해 부적절한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회수율의 향상, 환경부하가 적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함유희귀금속의 추출기
술개발 등 희귀금속의 재자원 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최종처분장의 영구적인 감시체제구축



‘부(負)의 유산’으로 멀어지게 되는 폐기물의 최종처분장에 대해서 적정하
고 치밀한 관리, 감시체제를 구축하고 사람의 건강을 위협받지 않는 안전하
고 안심할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그를 위해서 (1)안정형 최종처분장에 대해서 매립 가능한 안정 5개 품목
(폐플라스틱, 금속, 유리 및 도자기, 고무, 잔해 등) 이외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 체크체제의 구축 (2)유지관리적립금 산출법의 재검토(상황의 변

화에 따른 탄력적이고 정확한 산출방법을 확립)와 적정한 관리의 확보 (3)최종처분장에 대해서 영구적인 감시체제의 구축 (4)국가 또는 국가의 지원에 의한 유해물질 무해화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불법투기사안 대책



불법투기사안에 대해 가능한 한 조기에 원상회복이 되도록 필요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전면적인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2013년 3월말로 실효가 되는 ‘특정산업폐기물에 기인하는 지장의 제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산폐특조법)의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1)산폐특조법에 기초한 국고보조금(‘삼위일체 개혁’으로 폐지)의 부활 (2)국가(국가 및 지방기관 포함)와 도도부현 등과의 연계협력관계 강화추진 (3)원상회복(지장의 제거 등) 관련기술의 연구개발 및 응용실증 시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표류·표착 쓰레기 대책



표류, 표착 쓰레기 대책으로서 (1)표류, 표착 쓰레기의 신속하고 적절한 처리(수거, 운반, 처분)의 추진에 필요한 국가의 재정지원조치를 충실히 하고 특히 도서지방의 시정촌에 대한 지원을 확충 (2)해안관리자와 시정촌의 처리 책임의 소재와 분담에 대해 현행법을 정리하고 종적행정을 시정 (3)농림수산성, 국토교통성 소관의 재해관련 긴급대규모 표착유목 등 처리대책사업의 채택기준(표착양이 기준)을 완화 (4)재해 등 폐기물 처리사업비 보조금의 대상지역을 확충 (5)표류, 표착 쓰레기 삭감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를 구축 (6)국내의 육지지역과 연안지역에 있어서의 발생원 대책을 추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의 실정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섬지역의 폐기물 문제는 섬지역 특유의 특수성에서 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섬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섬 진흥책 일변도가 아닌 섬의 환경보전과 함께 관광의 진흥에도 기여하는 대책으로서 (1)폐기물 집적장에서 항만까지의 육상반송비용 및 해상반출비용문제에 대한 대응 (2)항만에 있어서의 폐기물 임시 야적장의 정비 (3)표류, 표착 쓰레기 대책의 추진 (4)부적절한 처리(불법투기 등)의 우려가 있는 섬 외부폐기물의 유입미연방지체제의 구축 (5)폐사 물고기의 처리대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초당파 의원입법으로 성립된 생물다양성기본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아직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련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종 보존법'의 개정, 외래생물종규제법의 개정,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전과 농림수산업 피해대책을 위한 인재육성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조치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전략적 환경평가(SEA)의 의무화, 교육 등의 충실, 보급계발과 홍보, 성청 간의 연계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풍부한 생태계를 키우는 자연환경을 국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금 등에 출연을 추진하고, NGO와 협력하면서 국제적인 조사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남아있는 귀중한 습지를 보전하고 손실된 습지를 회복하기 위하여 습지보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2010년 생물다양성조약 제10회 체결국 회의(COP10)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것을 감안하여, 호스트 국가에 걸맞는 시책의 전개에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곰의 이상출몰이 급증하면서 그에 따른 인적피해와 농작물피해 등이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한때 인간과 곰이 공생할 수 있었던 시대가 존재했던 사실을 상기하여, (1)서식지 관리 (2)중산간지역의 활성화 (3)피해방제를 주요정책으로 하여 인간의 안전확보와 농작물피해 등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실하게 강구하면서 가능한 한 생태계의 재생, 회복에 노력하여 곰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체의 적정관리를 위해 지속적이고 과학적인 조사, 연구의 실시, 곰 조우의 미연방지, 곰을 쫓는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베어 독(bear dog)³²⁾의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보호지역의 관리를 다양한 주체에 의해 수행하여 그 수행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피드백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남아있는 가치가 높은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지역을 지정하면서 그 소유, 관리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취득에 대해서는 국가의 비용으로 계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각지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연보호운동 등 민간의 노력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개정된 자연공원법과 자연환경보전법의 엄정한 집행을 감시하고, 풍요로운 자연환경보호를 도모함으로써, 생물 다양성의 보전을 위한 노력을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32) 캐나다 원산의 개의 한 종류.

외래생물대책(이입종 대책)



국내 생태계를 파괴하는 외국으로부터의 이입종(移入種)을 규제하기 위해 외래생물종규제법에 더하여, 외래생물의 생태, 피해, 이용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 정비함과 동시에, 생태계 등에 관한 영향을 평가하는 수법을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효과적, 효율적인 방제실시에 관한 수법, 체제의 구축과 보급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원칙에 따라 이입종 규제의 강화, 비의도적 도입(다른 것에 섞이는 등 하여 국내에 들어오는 것)의 실태 파악과 대응에 임하겠습니다.

동물애호



동물애호의 철저를 위한 노력을 더욱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1)동물실험의 3R(대체법, 수의 감소, 고통의 경감)의 명문화 (2)동물학대에 대한 벌금인상 (3)동물유래감염증의 예방과 생태에 따른 사육노력 의무화 (4)이동판매업, 이미용업(애완동물 살롱)의 동물취급업에 대한 추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행하게도 버려진 개, 고양이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환경정비로 개와 고양이의 보호기간의 연장, 보호시설의 확대, NPO 등에 대한 양도의 추진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순환과 공생의 마을 만들기



순환과 공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실천하기 위해 지역의 역사적인 경관이나 환경이 보전되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른 환경과 조화되는 순환형 마을 만들기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환경부하가 적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원칙을 명시하고,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철저히 한 지역주권형 마을 만들기 시스템을 도시계획법이나 건축기준법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옥상녹화와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드는 '도시녹화법(가칭)'의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산촌의 보전



지역의 문화와 전통을 살려 지역에 의한 자율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는 지산지소(地産地消) 경제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일본의 산촌마을의 자연을 보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체험학습, 생태관광, 국산목재의 이용 등 소비면을 포함한 농산촌의 활성화대책 등을 도입하면서, 생물서식 공간 네트워크로서의 정비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 물질순환을 추진하고 지역이나 NGO 등의 활동에 의해 유지되어 온 산촌 특유의 특유의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는 구조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일본의 농업을 질, 양 모두 부흥하고, 유기농업의 추진 등으로 자라나는 생명이 넘치는 건강한 대지를 되찾아야합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의 사용량을 감소시키고 산촌을 활용한 순환적 지역의 생태계(생물 다양성)를 보전할 수 있는 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안 보전



자연상태를 유지한 해안은 생물의 번식, 서식장소로 또한 어업자원이나 기후변화 영향의 완화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도시화와 공업용지의 확보를 위해 인공해안이 급속하게 증가했습니다. 현재는 조금씩 감소하고 있지만 그래도 일본해안의 약 33%가 인공해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공해안이 되어버리면 원래의 생태계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더 이상의 인공해안화는 엄하게 자제해야합니다. 특히 갯벌과 산호초에 대해서는 그 주변지역도 포함한 보전을 도모하고, 일본에 남아있는 귀중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겠습니다.

국민의 자유활달한 헌법 논의를



“헌법은 공권력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주권자가 정한 근본규범이다.”라는 것이 근대입헌주의의 헌법의 정의입니다. 결코 일시적인 내각이 지향해야 할 사회상이나 자신들이 중시하는 전통, 가치를 노래하고, 국민에게 도덕이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규범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 주권’, ‘기본적 인권의 존중’, ‘평화 주의’라는 현행헌법의 원리는 국민의 확신에 의해 확고하게 지지되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들을 소중히 하면서 진정한 입헌주의를 확립하여 ‘헌법은 국민과 함께 있다.’는 관점에서 현행 헌법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하고 수정할 점이 있으면 수정하는 것을 국민 모두에게 책임을 가지고 제안하여 가겠습니다. 민주당은 2005년 가을에 정리한 ‘헌법제언’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과의 자유활달한 헌법논의를 하고, 많은 국민들이 개정을 요구하고, 국회 내에서의 광범위 하고 원활한 합의 형성이 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어떤지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가겠습니다.

